

현안분석 2002-11

디지털경제법제⑧

# 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

鄭 震 明

한국법제연구원

# 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

A Study on the Legal Basis for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Money

研究者 : 鄭震明(부산외대 법학부 교수)  
Chong, Jin-Myong

2002.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제 1 장 서 론 .....	7
제 2 장 전자화폐의 의의 .....	11
제 1 절 전자화폐의 개념 .....	11
1. 전자화폐의 개념 .....	11
2. 전자화폐와 유사한 지급결제수단과의 구분 .....	13
3. 소 결 .....	15
제 2 절 전자화폐의 종류 .....	16
1.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른 분류 .....	17
2. 기술설계에 의한 구분 .....	18
3. 온라인 유무에 따른 구분 .....	19
4. 계좌 유무에 따른 구분 .....	20
5. 범용성 여부에 따른 구분 .....	21
6. 화폐가치의 이전성에 따른 구분 .....	21
제 3 절 전자화폐의 특징 .....	22
제 4 절 전자화폐의 거래구조 .....	23
1. 발 행 .....	24
2. 가치저장 .....	24
3. 가치이전 .....	25
4. 결 제 .....	25

제 3 장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27
제 1 절 전자화폐의 법적 구성에 관한 논의 .....	27
1. 채권양도적 구성 .....	27
2. 지급지시적 구성 .....	28
3. 유가증권적 구성 .....	29
4. 금권적 구성 .....	29
5. 가치권적 구성 .....	30
6. 자유화폐적 구성 .....	30
7. 소 결 .....	31
제 2 절 전자화폐의 화폐적 특성에 대한 논의 .....	31
1. 전자화폐의 금전성 .....	32
2. 전자화폐의 통화성 .....	33
제 4 장 전자화폐 이용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37
제 1 절 발행자와 이용자간의 법률관계 .....	37
1. 전자화폐의 발행 .....	37
2. 전자화폐의 교부 .....	42
3. 전자화폐의 충전 .....	43
4. 전자화폐의 파손 .....	44
5.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	46
6.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	50
제 2 절 이용자와 가맹점간의 법률관계 .....	52
1. 서 .....	52
2. 전자화폐의 이전 .....	53

3. 전자화폐 이전의 효력 .....	56
제 3 절 발행자와 가맹점간의 법률관계 .....	60
1. 서 .....	60
2. 전자화폐의 상환청구 .....	60
3. 발행자의 파산 .....	63
<b>제 5 장 전자화폐 이용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b>	<b>67</b>
제 1 절 전자화폐 발행 .....	67
1. 전자화폐 발행에서의 개선방안 .....	67
2. 관계 법령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법제화 방향 .....	69
제 2 절 전자화폐의 가치저장 .....	75
제 3 절 전자화폐의 가치이전 .....	76
1. 전자화폐 이전의 효력 .....	76
2. 전자화폐의 수령거절 .....	76
3.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	77
4.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	78
제 4 절 전자화폐 결제 .....	79
1. 상환청구권 .....	79
2. 발행자의 파산 .....	80
<b>제 6 장 결 론 .....</b>	<b>81</b>
<b>참고문헌 .....</b>	<b>85</b>

## 제1장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컴퓨터의 대량보급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하여 기존의 거래와 다른 "전자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가 생겨나게 되었다. 전자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거래에 장애가 되었던 공간 및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외의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전자거래에 수반되는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거래실무에서는 인터넷상 신용카드의 재무정보를 전송해서 지급하는 방법, 인터넷상 온라인뱅킹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 e-Cash·Cyber Check 등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sup>1)</sup>

먼저 인터넷상 신용카드의 재무정보를 전송하여 지급하는 방법<sup>2)</sup>은 오프라인상의 지급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또한 기존의 신용카드 지급방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므로 신용카드 사기와 해킹 등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또한 신용카드 이용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부정사용의 위험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급방법은 전통적인 신용카드 지급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새로운 법적 현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서 신용카드 회원의 권리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지급 대행업자의 책임 등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종래에 제기되었던 법적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신용카

1)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이용하는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결제(77.7%), 인터넷뱅킹(28.9%), 휴대전화 결제(18.9%), 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15.4%), 폰뱅킹 계좌이체(11.9%), ARS결제(4.8%), 선불형 전자화폐(2.9%), 이메일뱅킹(1.0%), IC카드형 전자화폐(0.2%)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그리고 소비자들이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결제수단으로는 인터넷뱅킹(51.7%), 휴대전화 결제(40.3%), ARS결제(9.7%), IC카드형 전자화폐(7.9%), 이메일뱅킹(7.3%)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전자지급 결제수단 이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금융 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 조사 결과(2002.8.2)", <http://www.cpb.or.kr> 참조).

2) 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拙稿, "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인터넷法律』, 제6호(2001.5), 3쪽 이하.

드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되거나 실험되고 있어 신용카드 지급에 걸림돌이었던 보안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뱅킹”(Internet-Banking)은 종종 “온라인뱅킹” 또는 “홈뱅킹”이라고 불리며, 현재 지급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sup>3)</sup>은 지급거래의 새로운 법적 현상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수단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전통적이며 계좌와 결부된 지급거래 중의 하나이다. 즉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은 예금주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신의 예금은행에 대하여 자금의 이체를 지시함으로써 행하여지며, 다른 네트워크의 참여자 또는 다른 은행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뱅킹은 지급거래제도를 능가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단지 고객과 예금은행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상 지급거래의 새로운 방식<sup>4)</sup>인 “전자화폐”는 “사이버머니” 또는 “네트머니”라고 불리며, 전자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자지급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5)</sup> 여기서 전자화폐의 현금 없는 지급

3)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는 孫晉華, “電子資金移替去來의 規律方案”, 『商事法研究』, 제12집(1993.10), 221쪽 이하; 全三鉉, “銀行去來上 電子資金移替의 法的問題”, 『法學論叢』(숭실대), 제10집(1997.2), 2쪽 이하; 拙稿,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인터넷法律』, 제3호(2000.11), 25쪽 이하(이하에서는 “전자자금이체”라고 표시한다); 鄭煥亨, “電子資金移替制度”, 『韓國金融法研究』, 제4호(1991.2), 289쪽 이하.

4) 전자화폐에 대하여는 金銀基, “電子貨幣의 法的問題”, 『商事法研究』, 제16권 2호(1997.12), 87쪽 이하; 姜德주, “電子貨幣에 의한 決濟와 法的問題”, 『東亞法學』(동아대), 제27호(2000.7), 89쪽 이하; 宋五植, “電子貨幣와 法的課題”, 『民事法の實踐의課題』(開道 鄭煥淡教授 華甲紀念), 2000, 603쪽 이하; 이정윤,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제4권 1호(2000.12), 39쪽 이하; 鄭敬永, “電子貨幣의 法的構造”, 『商事法の展開』(荷邨 鄭東潤先生 華甲紀念), 1999, 523쪽 이하; 鄭完溶, “電子貨幣에 의한 電子決濟制度”, 『臺熙法學』(경희대), 제33권 2호(1998.12), 129쪽 이하; 拙稿,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인터넷法律』, 제4호(2001.1), 109쪽 이하(이하에서는 “전자화폐”라고 표시한다); 鄭煥永, “電子貨幣의 法的問題點과 改善對策에 관한 研究”, 『企業法研究』, 제13집(2000.11), 245쪽 이하; 洪起汝/全鍾鉉, “電子貨幣의 普及을 위한 法律上問題”, 『法律行政論叢』(전남대), 제20집(2000.12), 49쪽 이하; Escher, “Bankrechtsfragen des elektronischen Geldes im Internet”, WM 1997, 1173ff.; Kümpel, “Rechtliche Aspekte des elektronischen Netzgeldes (Cybergeld)”, WM 1998, 365; Werner, “Rechtsfragen des elektronischen Geldes”, in Hoeren/Sieber, Multimedia Recht, Teil 13.5.

5) 金銀基, 앞의 논문, 88쪽; 정경영, 앞의 논문, 523쪽; 鄭完溶, 앞의 논문, 133쪽;

기능을 고려하는 경우 전자화폐는 현금 없는 다른 지급방법과 다른 법률 문제를 야기한다. 즉 현금 없는 지급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예금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기장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장부금 성립의 본질적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지급의무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자 계좌에의 입금기장이 있게 되면 채무약속 형식의 무인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여기서 장부금은 현대의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 현금기능을 넘겨받았으나 전자화폐는 이러한 금전기능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지급방식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과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법제도 및 이론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즉 전자화폐는 기존의 법체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급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제도적·행정법적 문제와 민·상법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전자화폐에 대한 공법적 측면의 문제는 전자화폐와 관련된 정책결정의 문제이므로 전자화폐를 사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sup>6)</sup> 왜냐하면 전자화폐의 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공법적 규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법적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전자화폐의 사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현금 없는 지급수단인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그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화폐를 실용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화폐의 법적 의의와 그 기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拙稿, 전자화폐, 110쪽; Smendinghoff, *Online Law*,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1996, p. 114.

6) 이에 대한 일반론으로는 孫晉華, “새로운 電子支給制度의 法律問題와 立法論”, *情報社會에 對한 一般法 研究(II)*, 情報通信政策研究員, 1998, 248쪽 이하(이하에서는 “전자지급제도”라고 표시한다); 拙稿, “전자지급의 민사법적 과제”, *民事法學*, 제21호(2002.5), 217쪽 이하.

7) 사법상의 금전의 일반이론에 따라 전자화폐를 법적으로 구성한 논문으로는 森田宏樹, “電子マネーの法的構成(1)-(5)”, *NBL*, No. 616(1997.5), 6面 이하.





## 제 2 장 전자화폐의 의의

“금전”(Geld)은 지폐와 주화로 구체화된 화폐(Geldzeichen)이다. 금전은 현금(Bargeld) 개념과 동일시되지만 지급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급수단도 금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지폐 또는 주화를 이전함이 없이 입금기장에 의하여 신용기관에 대하여 채무약속을 성립시키는 장부금(Buchgeld)도 현금 없는 지급거래의 대상이 된다.<sup>8)</sup> 한편 이러한 객체적 관점에서의 금전개념과 나란히 금전은 통화수단으로 표시된 무인적 재산권(Vermögensmacht)이며, 통화매체로서 각인된 객관적 가치척도이다.<sup>9)</sup> 그러므로 전자거래에서 현금 없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를 법률상 어떠한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제 1 절 전자화폐의 개념

#### 1. 전자화폐의 개념

전자화폐(Electronic Money)<sup>10)</sup>는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으므로<sup>11)</sup> 이를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개념에 대하여는 사용되는 기술과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전자화폐의 지급수단에 의미를 두는 견해는 “은행 기타 전자화폐 발행자가 카드 또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화폐가치를 전자기호(protion)로 저장하고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회선을 통하여 자

8) Werner, “Rechtsfragen des elektronischen Geldes”, in Hoeren/Sieber, Multimedia Recht, Teil 13.5, Rn. 1.

9) 拙稿, 전자화폐, 120쪽.

10) 전자화폐라는 용어는 그 형태에 따라서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lectronic Cash), 디지털화폐(Digital Money, Digital Cash), 사이버화폐(Cyber Cash, Virtual Mone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전자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1) 전자화폐가 개발된 배경으로는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IC칩의 대용량화 및 저렴화, 정보네트워크 및 암호기술의 발달, 자기띠카드의 위·변조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 현금사용 미증의 하락추세 등을 들고 있다.

금결제가 이루어지고 다수간에 여러 목적으로 이용되는 화폐"라고 한다.<sup>12)</sup> 또한 전자화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매체에 입력된 전자정보로서 유통성과 발행자에 의한 환금성이 보장된 거래의 지급수단"이라는 견해도 있다.<sup>13)</sup> 이러한 견해는 전자화폐의 지급수단 내지 현금대체수단이라는 특징을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매체적 특성에 의미를 두는 견해는 "정보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적 매체"라고 한다.<sup>14)</sup> 나아가 전자화폐는 "발행자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플라스틱카드에 내장된 IC칩(integrated circuit chip) 또는 개인컴퓨터에 일정한 화폐가치를 저장한 다음 이를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는 견해가 있다.<sup>15)</sup>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금전가치의 재충전이 가능한 현금대용 수단이라는 특징을 강조하여 이를 본질적으로 전자적 증표(Electronic Token)에 해당한다고 한다.

생각전대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IC카드 또는 컴퓨터시스템에 저장하여 이를 이전함으로써 결제 등에 사용하는 전자정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자금이체와 구분된다. 즉 전자자금이체는 이용자가 금전적 가치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수단(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데 불과하다.<sup>17)</sup> 또한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이

12) 金銀基, 앞의 논문, 89쪽; 김택주, 앞의 논문, 90쪽; 이경윤, 앞의 논문, 42쪽; 鄭完溶, 앞의 논문, 133쪽; 鄭快永, 앞의 논문, 247쪽.

13) 정경영, 앞의 논문, 527쪽.

14) 岩村 充, 電子マネー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6, 34面; Kümpel, "Elektronisches Geld (cyber coins) als Bankgarantie", NJW 1999, 313; Pichler, "Rechtsnatur, Rechtsbeziehungen u. zivilrechtliche Haftung beim elektronischen Zahlungsverkehr im Internet", Arbeitsberichte zum Informations-, Telekommunikations- und MedienR.(Hrsg.: Hoeren/Holzengel), Münster, 1998, S. 6.

15) 김영갑/최성준, "情報社會에 對信한 商事法 研究 序說", 情報社會에 對信한 一般法 研究(I), 通信開發研究員, 1997, 192쪽; 孫晉華, 전자지급제도, 252/3쪽; 洪起汝/全鍾敏, 앞의 논문, 50쪽.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185쪽.

16)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Escher, WM 1997, 1180; Kümpel, WM 1998, 366.

17) 拙稿, 전자자금이체, 28쪽; 이경윤, 앞의 논문, 41쪽; 鄭完溶, 앞의 논문, 133쪽.

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결제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금전적 가치 이전에도 사용될 수 있다.<sup>18)</sup> 현재 전자화폐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이용이 주로 삼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같이 교환수단으로서의 이용에도 사용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전자화폐는 대금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신용카드와 구분된다. 즉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표시하는 전자 정보”이므로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단지 재무정보만 가지는 각종 카드와 구분된다.<sup>19)</sup>

## 2. 전자화폐와 유사한 지급결제수단과의 구분

전자화폐는 현재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시험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전자화폐의 정의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정의와 관련하여 전자화폐 이외에 현금 대용의 지급결제수단도 전자화폐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전자화폐와 유사한 지급결제수단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전자화폐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선불카드

우리 나라에서 “선불카드”(Prepaid Card)<sup>20)</sup>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호). 여기서 전자화폐의 기본요소로서 가치저장성과 범용성을 드는 경우 신용카드법상의

18)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Escher, WM 1997, 1182).

19) 또한 전자화폐는 전자화폐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의 수령청구권이 효력을 가지는데 반하여 각종 카드는 카드의 제시가 없어도 카드지급의 수령이 가능하다(Pfeiffer, “Die GeldKarte -Ein Problemaufriß”, NJW 1997, 1037).

20) “선불카드”, “직불카드”, “후불카드”라는 명칭은 “선금카드”, “직급카드”, “후급카드”라고 하여야 하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선불카드, 직불카드, 후불카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선불카드는 전자화폐와 선금이라는 공동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범용선불카드이므로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이용자 사이에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의 선불카드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sup>21)</sup> 또한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전자화폐 금액의 상환이 보장되어 있으나 선불카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환이 보장된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품과의 구체적인 교환청구권이 표창되어 있지 않은 점이 다르다.<sup>22)</sup>

### (2) 신용카드

우리 나라에서 “신용카드”(Credit Card)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 그러므로 법적인 형태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카드 자체에 권리 또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한데 반하여 전자화폐는 그 자체에 금액가치를 보유하는 지급수단이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는 양도가 불가능한데 반하여 전자화폐는 화폐가치의 양도가 자유롭다. 또한 이용결제 방식에 있어서 전자화폐는 선불식인데 반하여 신용카드는 후불식이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승인이 필요 없이 개인간에 결제가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신용카드는 발행자의 승인이 있어야 결제가 이루어진다.

### (3) 전자자금이체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는 지급결제제도에 서 서면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려는

21) 繼田恭一, “電子マネーは通貨になれるか”, 『銀行法務』, No. 550(1998.7), 30面.

22) 小澤毅夫, “電子マネーの取引当事者間の法律關係と損失の配分(I)”, 『NBL』, No. 623(1997.8), 10面.

것으로 전자거래의 중요한 결제수단이다. 양자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현금 없는 지급결제수단이며, 은행의 계좌를 통하여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sup>23)</sup> 그러나 전자화폐는 그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데 반하여 전자자금이체는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자 기타 제3자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이전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sup>24)</sup> 또한 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자의 개입 없이 지급이 완료되므로 수취은행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하나,<sup>25)</sup>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수취은행이 이체자금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 함으로써 지급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 3. 소 결

전자화폐는 아직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다양한 상태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자화폐의 법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 보면,<sup>26)</sup> 첫째 전자화폐는 IC 카드나 컴퓨터시스템에 금액가치를 나타내는 전자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소비자가 구매시에 카드를 제시하던지 또는 컴퓨터로 전자정보를 송신함으로써 당해 전자적 정보가 자동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셋째 기존의 각종 카드와 같이 소유자의 허락에 의하여 은행의 예금계좌에 접근하는 지급형태를 띠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IC카드 또는 컴퓨터시스템에 저장하여 이를 이전함으로써 결제 등에 사용하는 전자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자화폐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카드와 같은 현금 대용의 지급결제수단도 전자화폐에 포함시켜 논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23) 拙稿, 전자자금이체, 27쪽.

24) 拙稿, 전자화폐, 111쪽; 金銀基, 앞의 논문, 96쪽; 이경운, 앞의 논문, 41쪽; 鄭完容, 앞의 논문, 133쪽.

25) 정경영, 앞의 논문, 533쪽.

2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Electronic Money-consumer protection, law enforcement, supervisory and cross border issues-",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electronic money April 1997(<http://www.bis.org/publ/gten01.htm>).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정의를 넓은 의미의 전자화폐 및 좁은 의미의 전자화폐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보다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개념 이외에도 사용하는 기술과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현금 대용의 지급결제수단을 포함하는 통상적 의미의 전자화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sup>27)</sup> 그러나 현금 대용의 지급결제수단을 전자화폐의 하나로 보아 함께 규율하는 경우<sup>28)</sup> 전자화폐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적 규율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개발되는 경우 법규의 흠결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화폐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이를 전자화폐와 유사한 지급결제수단에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는 어느 법률에 정의규정을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sup>29)</sup> 예컨대, 은행법에서 전자화폐를 규정하는 경우 예금을 대가로 카드 등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에 반복적으로 화폐가치가 저장되어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발행금융기관의 부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은행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보다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유가증권과 같이 금액가치가 증권에 화폐된 것이 아니라 가치저장장치에 저장된 전자적 가치 그 자체이며, 전자적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지급이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지급결제수단과 다른 법률에서의 개념정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제 2 절 전자화폐의 종류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에 이용된 기술과 이용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라서는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구분되며, 기술적인 설계에 따라 “통화형 전자화폐”와 “잔고형 전자화폐”로 구분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

27) 이경윤, 앞의 논문, 43쪽.

28) 이러한 견해로는 이경윤, 위의 논문, 43쪽.

29) 金銀基, 앞의 논문, 91쪽 주 10).

용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온라인형 전자화폐"와 "오프라인형 전자화폐"로 구분되고, 전자화폐의 기록이 계좌에 기록되는가에 따라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로 구분된다. 그 이외에 전자화폐의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범용성 전자화폐"와 "단일목적형 전자화폐"로 구분되고, 소지자 사이에 전자화폐의 가치이전이 가능한가에 따라 "개방형 전자화폐"와 "폐쇄형 전자화폐"로 구분된다.<sup>30)</sup>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현재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자화폐를 유형별로 구분하며 살펴보기로 한다.

### 1.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른 분류

전자화폐는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라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나눌 수 있다.

카드형 전자화폐는 카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처럼 지급에 사용하는 전자화폐로서, 전자지갑(Electronic Purse)이라고도 한다. 이는 발행자로부터 미리 일정금액을 전자화폐에 이전 받아 사용하며, 저장된 금액을 모두 사용하면 다시 충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 전자화폐는 다시 매체에 전자가치를 저장하는 기술적 방식에 따라 자기띠(Magnetic Strife)형 전자화폐와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형 전자화폐로 나누어지며, 카드의 사용방법에 따라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누어진다. 접촉식 전자화폐는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여 전자화폐에 내장된 가치가 이전되도록 하는 것으로, 대표적 예로는 미국 비자인터내셔널(VISA International)사의 비자캐쉬(VISA Cash), 영국 몬덱스(Mondex)사의 몬덱스카드(Mondex Card) 그리고 벨기에 뱅크시스템(Banksys)사의 프로톤(Proton)이 있다. 비접촉식 전자화폐는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삽입하지 않고서 일정 거리 내에 접근하여 전자화폐에 내장된 가치가 이전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버스카드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그리고 시중은행 등이 "K-캐쉬"라는 한국형 전자화폐를 개발하여 시범 사용 중에 있다.

30) 이에 대하여는 拙稿, 전자화폐, 113/4쪽; 金銀基, 앞의 논문, 92쪽 이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인터넷과 같은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상은행 또는 거래은행과 접속되는 컴퓨터에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형태의 전자화폐로서, 디지털화폐(Digital Cash)라고도 한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현금과 대동한 기능을 지니면서 일방적 정보의 수신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sup>31)</sup> 보안성 및 안전성의 문제로 그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로는 미국 사이버캐쉬(Cyber Cash)사의 사이버코인(Cyber Coin), 네덜란드 디지캐쉬(DigiCash)사의 이캐쉬(E-Cash)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니시스의 "이니페이", 한국정보통신의 "이지캐쉬" 등이 대표적이다.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매체가 다르지만 경제적 및 기능적 특성이 유사하다. 즉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사용시에 카드가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카드형 전자화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장차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카드형 전자화폐에 금전적 가치를 반복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양 유형의 통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32)</sup> 그러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 2. 기술설계에 의한 구분

전자화폐는 발행시에 지급한 대가가 발행자 소유의 자금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통화형 전자화폐"와 "잔고형 전자화폐"로 구분된다.<sup>34)</sup>

통화형 전자화폐는 발행자가 거래의 발생 이전에 그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한 금액가치를 의미하는 전자정보를 발행하고 그 전자정보 자체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의 전자화폐로서, Mondex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이용자가 통화형 전자화폐를 구입하면 전자화폐의 점유 및 소유권이 발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이전한다. 그러므로 통화형 전자화폐의 점유

31) 金銀基, 위의 논문, 93쪽; 鄭完容, 앞의 논문, 134쪽.

32) 금융결제부, "전자화폐의 발행과 규제에 관한 BIS보고서", 1996.8, 2쪽.

33) 금융결제부, "전자화폐의 법률적 측면에 관한 BIS보고서", 1996.8, 13/4쪽.

34) 이를 "통화형 전자화폐"와 "예금형 전자화폐"로 부르는 견해도 있다(정경영, 앞의 논문, 531쪽).

자는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전자화폐의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즉 통화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발행자금과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교부 받는 유상거래의 형태로서 그 발행자금은 발행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화형 전자화폐는 가치소재형 지급수단과 유사하다.<sup>35)</sup>

이에 대하여 잔고형 전자화폐는 이용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전자화폐의 잔고를 발행자가 관리하고 이용자가 거래를 할 경우에 한쪽을 차감시키고 다른 한쪽을 증가시키는 결제방법을 취하는 전자화폐로서, E-Cash가 대표적 예이다. 잔고형 전자화폐는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지만 발행자금이 발행자의 일정한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히려 잔고형 전자화폐는 일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전자정보라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어 유통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잔고형 전자화폐는 물권적인 소유권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지급지시형 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통화형 전자화폐는 가치소재형 지급수단이므로 소액거래에 용이하다. 그러나 통화형 전자화폐는 채권적 법리보다 물권적 법리에 따르므로 전자화폐 또는 이를 저장하고 있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 그 가치를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화폐가 변형, 손상되어 전자정보를 해독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치회복이 어렵다. 이에 대하여 잔고형 전자화폐는 가치표창적 지급수단이므로 고액거래에 용이하다. 특히 잔고형 전자화폐는 개개의 전자정보가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강하며, 발행은행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수취인의 IC카드로 전자정보가 이전되어 지급이 완료되므로 수취은행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하다.

### 3. 온라인 유무에 따른 구분

전자화폐는 사용시에 전자화폐를 운용하는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sup>37)</sup> "온라인형 전자화폐"와 "오프라인형 전자화폐"로 나눌 수 있다.

35) 정경영, 앞의 논문, 532쪽.

36) 정경영, 위의 논문, 533쪽; 洪起洙/全鍾鉉, 앞의 논문, 55쪽.

37) 이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전자화폐를 지분 또는 전달할 때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는 견해도 있다(이경윤, 앞의 논문, 42쪽).

온라인(On-Line)형 전자화폐는 주컴퓨터의 전산망을 통하여 신분 및 비밀번호 확인, 가치이전, 거래내역 입력 등이 행하여지는 전자화폐이고, 오프라인(Off-Line)형 전자화폐는 주컴퓨터의 전산망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신분 및 비밀번호 확인, 가치이전, 거래내역 입력 등이 행하여지는 전자화폐이다.

온라인형 전자화폐는 전자자금이체와 유사하게 은행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간 금액가치가 이전되지만, 오프라인형 전자화폐는 거래당사자간 금액가치 이전에 제3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전산망의 장애 또는 금융전산망 가동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온라인형 전자화폐는 금액가치의 저장기능 및 재저장기능이 없으며, 전자화폐의 사용시를 예금의 인출시점으로 본다면 전자자금이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양자는 의사표시 등과 같은 기초적 법률관계에 차이가 있다.<sup>38)</sup>

#### 4. 계좌 유무에 따른 구분

전자화폐는 거래기록의 관리 및 추적 여부에 따라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로 나눌 수 있다.

계좌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의 거래기록이 은행 등의 주컴퓨터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거나 기록 추적이 가능한 전자화폐로서, 이의 대표적 예는 비자인터내셔널(VISA International)사의 비자캐쉬(VISA Cash)와 사이버캐쉬(Cyber Cash)사의 사이버코인(Cyber Coin)이 있다. 이에 반하여 비계좌형 전자화폐는 화폐의 가치기록이 카드 자체나 기록매체 자체에만 기록되고 거래시 단말기에는 거래기록이 나타나지만 은행 등의 주컴퓨터에는 거래량만 전송되는 전자화폐로서, 이의 대표적 예는 디지캐쉬(DigiCash)사의 이캐쉬(E-Cash)가 있다.

양자는 발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자화폐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계좌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금액에 상당하는 구입대금이 은행의 일정한 계좌에 보관되어 나중에 상환자금으로 사용되므로 발행자

38) 拙稿,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比較私法』, 제6권 1호(1999.6), 296 쪽 이하(이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고 표시한다).

로부터 소비자에게 금액가치의 이동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비계좌형 전자화폐와 구분된다. 그러므로 법적 측면에서, 특히 예금자보호법이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좌형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가 용이하다.<sup>39)</sup>

#### 5. 범용성 여부에 따른 구분

전자화폐의 용도가 한정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범용성 전자화폐”와 “단일목적형 전자화폐”로 나눌 수 있다.

범용성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의 용도가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를 말하며, 단일목적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의 용도가 특정 목적에만 한정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단일목적형 전자화폐는 기존 화폐의 대응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현재는 대개 범용성 전자화폐를 개발하여 시범운용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범용성 여부에 따른 구분은 전자화폐의 잠재적 위험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발행자 범위 및 규제방법의 측면에서 구분의 실익이 있다.<sup>40)</sup>

#### 6. 화폐가치의 이전성에 따른 구분

전자화폐는 소지자간 화폐가치의 이전이 가능한가에 따라 “개방형 전자화폐”와 “폐쇄형 전자화폐”로 나눌 수 있다.

개방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소지자간에 화폐가치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말하며, 이의 대표적 예로는 몬덱스사의 몬덱스카드(Mondex Card)가 있다. 폐쇄형 전자화폐는 화폐가치가 발행자에서 소비자, 소비자에서 가맹점으로, 가맹점에서 전자화폐 발행자로의 일방적인 이전만 가능하고, 소지자간 화폐가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전자화폐를 말하며, 이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 사이버캐쉬사의 사이버코인(Cyber Coin), 네덜란드 디지캐쉬사의 이캐쉬(E-Cash)가 있다.

39)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94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55쪽.

40) 금융결제부, 앞의 보고서, 2쪽.

### 제 3 절 전자화폐의 특징

새로운 전자지급제도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본질적으로 전자정보로 이루어진 화폐로서, 기존의 화폐가 가지는 가치척도 기능, 교환·지급 기능 그리고 가치저장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유통성, 양도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등의 현금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sup>41)</sup>

첫째, 전자화폐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통성은 전자화폐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자화폐는 유통성에 있어서 현금에 뒤지지만 거래당사자간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맹점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폐쇄형 선불카드나 재충전이 가능한 범용선불카드, 신용카드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종의 카드보다 폭넓은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자화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가진 전자정보로 이전되므로 그것이 카드형인지 아니면 네트워크형인가와 같은 유통방식은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다.<sup>42)</sup>

둘째, 전자화폐는 이를 타인에게 연속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현금과 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개인 및 기업간 양도가 자유롭지만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개입을 조건으로 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전자화폐는 일정금액을 나타내는 전자정보이지만 이를 일정한 매체에 저장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는 일정한 매체에 저장된 교환가치를 이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타인에게 받은 전자화폐 자체를 전전 양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전자화폐는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범용성을 가져야 한다. 범용성 측면에서 현금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전자화폐는 거래당

41)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자성, 유통성, 지급수단성, 환금성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정경영, 앞의 논문, 525쪽).

42) 같은 위치: 정경영, 앞의 논문, 5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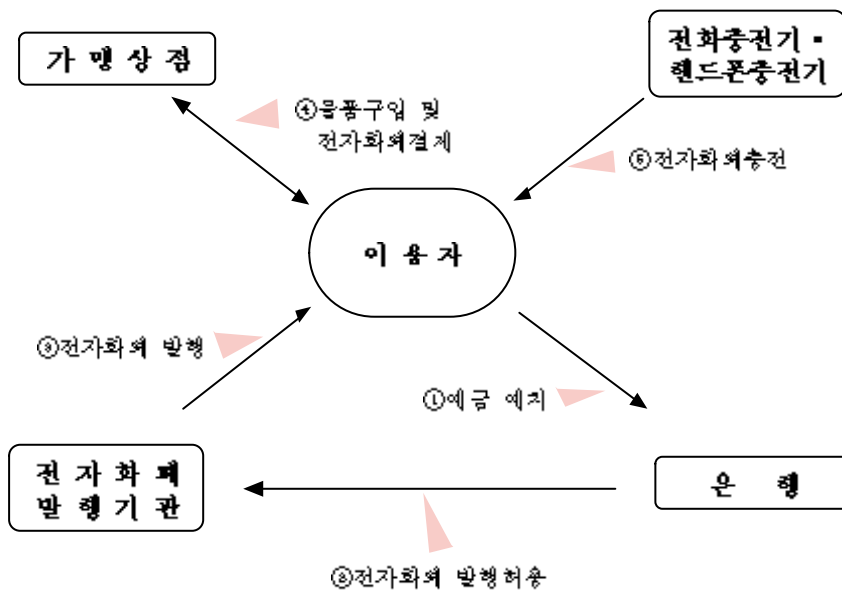
사자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범용성이 약하며, 폐쇄형 선불카드  
는 범용성이 없다.<sup>43)</sup>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전자정보이면서 지  
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자화폐  
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더라도 법정화폐로 규정되기 전에는 화폐  
대용물에 불과하므로 최종소지인이 이를 통화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전자화폐는 화폐사용자와 화폐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없어야 하는  
익명성이 있어야 한다. 현금, 선불카드, 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익명성이  
강하나 신용카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익명성이 약하다. 익명성을 만  
족하는 전자화폐는 이를 사용할 때 은행 또는 제3자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전자화폐를 통한 지급시스템에 대하여 신뢰하게 된다.

### 제 4 절 전자화폐의 거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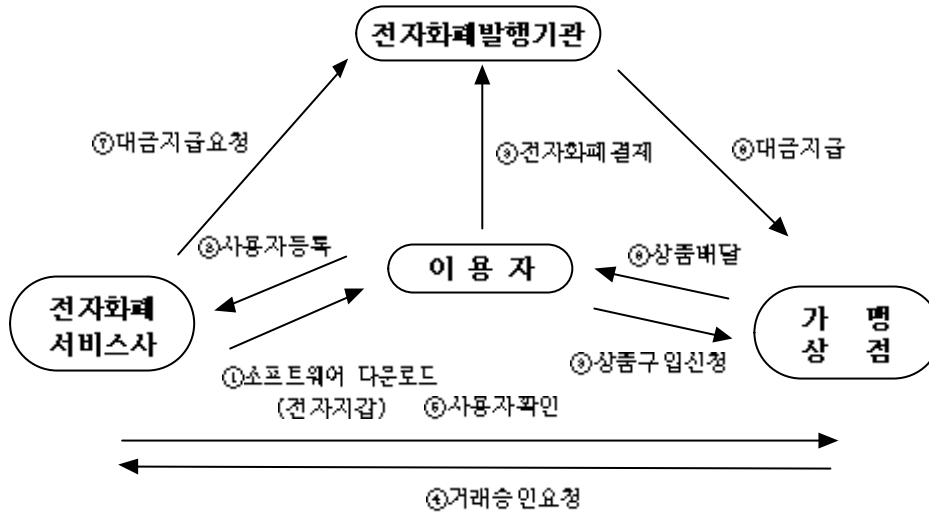
전자화폐는 화폐가치의 저장방식에 따라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  
분되는데, 각 유형의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 카드형 전자화폐



43) 金銀基, 앞의 논문, 95/6쪽.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1. 발 행

전자화폐의 발행은 이용자가 발행자에 대하여 현금 또는 예금을 미리 예치하고 발행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상당액의 화폐가치를 이전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발행은 화폐가치의 저장 또는 이용자에 대한 교부의 시점에서 행하여진다. 이 때에 전자화폐 발행자는 전자화폐를 구성하는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또는 전문회사와 이용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자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비금융기관도 전자화폐의 발행이 가능한 경우 발행자는 가맹은행을 통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2. 가치저장

발행자 또는 가맹은행은 그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전자화폐용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를 대여하거나 판매한다.

이 때에 IC카드에는 예금의 인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정보가 저장되며, 네트워크형에 있어서는 결제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에 내려 받기 한다. 특히 전자화폐가 유효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발행자는 전자화폐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전자화폐가 이미 이전에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Double Spending Protection).<sup>44)</sup>

### 3. 가치이전

이용자는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에 저장된 전자화폐를 가맹상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비계좌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가맹은행은 전자화폐의 가치이전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전자화폐의 이전은 개인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 4. 결 제

이용자는 언제라도 발행자 또는 가맹은행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통화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가맹상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으로 수령한 전자화폐를 다른 결제에 사용하거나 발행자 또는 가맹은행에 통화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화로 상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전자화폐의 유통성은 극대화되지만 발행자 사이의 청산관계 및 예금과의 대응관계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

---

44) 전자화폐는 한 번만 사용되어야 하며, 만일 이중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정보가 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장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제 1 절 전자화폐의 법적 구성에 관한 논의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수단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또한 현재에도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급수단의 범주에 포함시켜 어느 하나의 법적 성질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기존의 지급수단을 토대로 하여 결제당사자 사이에 채무소멸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채권양도적 구성

전자화폐를 발행자에 대한 금전채권(예금채권)으로 보는 견해이다.<sup>45)</sup> 즉 현금 또는 예금을 미리 예치하고 전자화폐를 발행 받은 이용자는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고, 그 금전채권을 가맹점에 양도함으로써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채무가 소멸된다는 법적 구성이다.<sup>46)</sup> 이 설은 전자화폐를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간주하며,<sup>47)</sup> 전자화폐의 발행·이전·결제의 전과정을 채권양도로 법적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성에 따르면 전자화폐가 발행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고(상법 제64조),<sup>48)</sup> 일정한 경우 발행자가 예금채권에 존

45) 寺本振彦 外, “電子マネーの實用化に向けて(上)”, 『NBL』, No. 614(1997.4), 42面.  
46) 이러한 견해에 있어서는 전자화폐를 발행자에 대한 전자적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의 자금청구권이 화폐된 것으로 본다(최경진, 앞의 책, 189쪽).  
47) 전자화폐를 예금채권으로 볼 경우 지급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무인적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발행자는 전자화폐의 발행 이후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또한 합의된 장부상의 지급도 중지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Escher, WM 1997, 1182; Kümpel, NJW 1999, 314).  
4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화폐 발행자가 먼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을 특약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상의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増田 稔, “電子マネーをめぐる公法上の諸問題”, 『金融法務事壇』, No. 1503(1998.1), 52面).

재하는 상계 등의 항변사유를 전자화폐의 최종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또한 전자화폐와 관련된 예금채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전자화폐 소지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2항).<sup>49)</sup> 예컨대, 이용자가 전자화폐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화폐를 양도한 후 파산선고를 당하거나 전자화폐를 압류 당하면 이를 양수한 다른 이용자 또는 가맹점은 파산관재인이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 지급지시적 구성

전자화폐를 발행자에 대한 지급지시로 보는 견해이다.<sup>50)</sup> 즉 전자화폐는 지급지시의 수단으로 발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이용자로부터 가맹점에게 그리고 가맹점으로부터 발행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발행자와 이용자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예금에 대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sup>51)</sup> 그러므로 이 설은 발행자가 이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을 수행함으로써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 채무가 소멸된다는 법적 구성이다.<sup>52)</sup>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성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이전만으로 결제당사자 사이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지시에 터잡아 예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 설에 따르면 유통단계에서 전자화폐의 이전은 예금지급의 중간단계에 불과하므로 전자화폐가 발행자에게 상환청구 되어 최종소지인에게 지급되기 전에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sup>53)</sup> 또한 가맹점 등에서 전자화폐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여 가맹점에 이전된 전자화폐가 그 이후 발행자에게 상환청구 되기 전에는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 채무

49) Escher, WM 1997, 1181; Kümpel, NJW 1999, 320.

50) 增田 晋, 前掲論文, 39面.

51) 이와 같이 전자화폐를 지급지시의 수단으로 파악하면 전자화 된 수표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洪起汝/全鍾敏, 앞의 논문, 60쪽 주 28).

52) 이러한 법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시의 철회가 문제된다(Kümpel, WM 1998, 367).

53) 增田 晋, 前掲論文, 46面.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이 이용자에 대하여 다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그리고 발행자에 대한 지급지시를 위임계약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위임계약이 소멸되어 전자화폐 소지인은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민법 제690조 참조).

### 3. 유가증권적 구성

전자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이다.<sup>54)</sup> 즉 전자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파악하여 이용자가 가맹점에 전자화폐를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법적 구성이다. 이 설은 전자화폐의 발행은 발행자의 지급약속이 표창된 유가증권의 발행으로 보며, 전자화폐의 상환청구에 의하여 지급거래가 완결된다는 점에서 지급지시형 지급수단으로 법적 구성한다.<sup>55)</sup>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성에 따르면 무엇을 유가증권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IC카드를 유가증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 IC카드 내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증권성이 없게 되며, 화폐정보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경우 전자정보는 증서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sup>56)</sup> 그 이외에도 유가증권의 선의취득과 지급면책(어음법 제16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 제2항) 등의 법률효과를 법률이 특별히 전자화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법적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

### 4. 금권적 구성

전자화폐를 인지와 같은 금권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가맹점에 금권을 교부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된다는 법적 구성이다. 이러한 법적 구성에 따

54) Herry H. Perritt, *Legal Journ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for Electronic Payment Systems*, 22 Rutgers Computer & Tech. L. J. 1. 39 (1996); Escher, WM 1997, 1181.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는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개별적 법적 사고를 전자화폐에 유추할 수 있다고도 한다(Pfeiffer, NJW 1997, 1037).

55) 정경영, 앞의 논문, 535쪽.

56) 이를 위하여 전자화폐를 구성하는 전자정보를 유가증권(Wertpapieren)이 아닌 유가정보(Wertdaten)라고 한다.

르면 전자화폐의 전자정보를 가치 그 자체인 금권으로 구성하므로 전자화폐에 현금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권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전자정보로 구성되는 전자화폐에 대하여 증권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발행되는 금권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그 이외에 전자화폐를 금권적으로 법리 구성하면 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전자화폐 소유자가 되고, 악의의 경우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문제만 남게 된다.<sup>57)</sup>

### 5. 가치권적 구성

전자화폐를 가치 그 자체로 보는 견해로,<sup>58)</sup> 전자화폐 가치의 이전에 의해 채무가 소멸된다는 법적 구성이다. 즉 전자화폐는 일정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되고, 발행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가맹점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전자화폐를 유통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객관적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sup>59)</sup>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성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과연 가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있으며, 전자화폐 발행계약 및 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6. 자유화폐적 구성

전자화폐는 거래당사자가 전자화폐를 이전함으로써 현금교부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자유화폐라는 법적 구성이다.<sup>60)</sup> 즉 전자화폐는 실제로 발행자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 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의 합의 그리고 이용자와 가맹점 및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현금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전자화폐 이용자도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

57) 김택주, 앞의 논문, 98쪽.

58) 洪起汝/全鍾鉉, 앞의 논문, 62쪽.

59) 增田 晋, 前掲論文, 61/2面.

60) 같은 취지: 拙稿, 전자화폐, 118쪽; 이경윤, 앞의 논문, 54쪽; 鄭快永, 앞의 논문, 247쪽;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電子マネー-實現に向けての法的検討”, 『NBL』, No. 640 (1998.5), 13面.

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화폐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자유화폐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성에 따르면 자유화폐라는 개념이 불확실하고, 전자화폐에 의한 번제를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번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자화폐의 경우 이와 같이 강한 통용력을 인정할 수 없다.<sup>61)</sup>

## 7. 소 결

전자화폐는 그것이 거래에서 이용되는 측면에서 보면 채권설의 주장과 같이 발행자에 대한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화폐가 가지는 유통성 및 결제의 즉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지급지시설은 결제과정에 중점을 두고 전자화폐라는 전자정보를 지시하여 대금결제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전자화폐 거래의 법적 성질을 강조함으로써 전자화폐 자체의 성질은 구별하지 않고 전자화폐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가증권설 및 금권설은 화폐가 가지는 유통성 및 결제의 즉시성 측면에서는 채권설이나 지급지시설보다 진일보 한 것이지만 전자정보의 저장이라는 발행형식이나 이전방식이 다르므로 전자화폐를 유가증권이나 금권으로 보기 어렵다. 생각전대 전자화폐는 주화나 은행권과 같은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는 아니며, 거래계에서 사실상 통용력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것을 임의로 수령하면 금전채무 본지에 따른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전자화폐는 이용당사자간에 대금결제의 즉시성이 요구되는데, 자유화폐설은 전자정보가 이전될 때 그 가치가 그대로 이전된다고 이론 구성함으로써 전자화폐의 본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제 2 절 전자화폐의 화폐적 특성에 대한 논의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자화폐가 사법적으로 어떠한 화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화폐는 기존의 지급수단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의 대항요건,

61) 김택주, 앞의 논문, 97쪽.

시효, 발행자의 파산, 집행방법 등 사법상의 여러 가지 효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up>62)</sup> 그러므로 금전채권의 목적인 금전 및 금전채권을 소멸시키는 화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자화폐가 가지는 지금의 법적 의미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자화폐의 금전성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화폐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금전채권을 화폐로 변제한다는 것은 화폐라는 유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화폐는 물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sup>63)</sup> 화폐가 금전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적 존재로서의 유체물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화폐가 표창하는 일정한 금전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의 목적은 화폐라고 하는 유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에 포함된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채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금전적 가치의 이전은 다시 가치단위와 지급단위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금전의 가치단위는 일정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반하여 금전의 지급단위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sup>65)</sup> 예컨대, 민법 제373조의 “금전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금전은 금전의 가치단위를 가리키므로 금전채권의 변제와 무관하며, 오히려 그 전제로서 재산 및 이익의 금전적 평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단위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면책력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것을 이전함으로써 가치단위에 따라 평가된 금부가 소멸된다.<sup>66)</sup> 이와 같이 금

62) 內田 眞, “電子商去來と法(3)”, 『NBL』, No. 602(1996.10), 37面.

63) 화폐는 법률적으로 동산에 속하지만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지급수단이며, 또한 일정한 가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동산과는 다르다고 한다(郭潤直, 債權總論, 58쪽(1998)).

64) 같은 취지: 李慈炫 등, 民法注解(VII), 161쪽(郭潤直 등 편, 1995); 森田宏樹, 前掲論文(2), 『NBL』, No. 617(1997.5), 25面.

65) 森田宏樹, 前掲論文(2), 25面.

66) 森田宏樹, 上掲論文(2), 25面.

전은 가치단위에 의해서 표시된 일정액이라는 개념과 지급단위에 의해서 표시된 일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에 채무자는 지급단위를 이전함으로써 금전채권이 소멸된다. 여기서 결제는 지급단위의 이전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완료되는 특징을 고려하면 지급단위의 이전을 예칭하여 발행된 전자화폐는 결제에 있어서 현금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전자화폐의 통화성

지급단위의 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화, 즉 일정 지급단위가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상태가 창출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여기서 전자와 같이 일정 지급단위가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금전채권의 변제, 즉 변제효과인 채무의 면책력을 뜻하므로 통화매체로서 전자화폐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sup>67)</sup> 왜냐하면 통화매체성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법정화폐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강제통용력 있는 법정화폐만이 채무 면책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후자와 같이 통화매체가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인 통화수단으로서의 법적 성질도 문제된다. 왜냐하면 전자화폐의 결제방법은 현금통화를 사용하는 결제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 (1) 통화매체로서의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주화나 지폐 같은 화폐는 법정 통화매체이다. 화폐가 통화매체인 것은 금속과 종이라는 매체에 지급단위가 표창된 것이지만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통화매체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즉 화폐가 금전채권의 변제로서 채무 면책력을 가지는 것은 화폐가 통화매체라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내포된 일정 지급단위가 법에 의하여 동가치가 있다고 승인되기 때문이다.<sup>68)</sup> 즉 화폐가 채무 면책력을 가진다는 것은 화폐가 강제

67) 森田宏樹, 上掲論文(2), 30面.

68) 森田宏樹, 上掲論文(3), 『NBL』, No. 619(1997.6), 30面.



통용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69)</sup> 그러나 금전채권에 있어서 강제통용력 없는 통화매체의 수령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만일 채권자가 그것을 임의로 수령한다면 금전채권은 본래의 변제로서 소멸한다.<sup>70)</sup> 또한 통화매체의 강제통용력을 배제 또는 수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가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76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강제통용력이 없어도 채무 면책력이 인정되는 통화매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화폐인 전자화폐는 통화매체성이라는 요소에 있어서 법정화폐인 현금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전자화폐의 이전이라는 결제방법이 강제통용력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71)</sup>

## (2) 통화수단으로서의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현금통화에 의한 결제는 통화매체인 화폐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현금통화의 소유권 이전은 통화매체의 소유자가 금전채권의 이행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서 그 점유를 이전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sup>72)</sup> 이는 현금통화에 포함된 지급단위라는 가치적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이에 반하여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의 이전에 의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무자가 가지는 예금채권과 그 소멸에 수반해서 채권자가 가지는 예금채권은 법적으로 별개로 각각 소멸하고 생성된다. 다만 이 두 개의 채권 사이에는 지급단위의 일정액에 대한 견련관계가 존

69) “強制通用力”은 兌換義務가 정지된 은행권에 대하여도 그 통용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인데 반하여 “法定通用力”은 금전채권의 변제로서 그 수령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환이 정지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강제통용력이라는 용어는 법정통용력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강제통용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70) 같은 취지: 鄭完容, 앞의 논문, 151쪽; 李恭炫 등, 民法注解(Ⅷ), 163쪽(鄭潤直 등 편, 1995).

71) 森田宏樹, 前掲論文(4), 『NBL』, No. 622(1997.8), 34面.

72) 鄭完容, 앞의 논문, 151쪽; 森田宏樹, 上掲論文(5), 『NBL』, No. 626(1997.10), 48面.

재하므로<sup>73)</sup> 전자화폐의 이전은 전연관계 있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는 통화수단의 측면에서도 다른 예금통화와는 달리 현금통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73) 森田宏樹, 上掲論文(5), 49面.



## 제 4 장 전자화폐 이용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전자화폐는 현금 또는 예금을 미리 예치하고 화폐가치를 이전 받는 발행과 가치저장, 결제당사자간에 금전에 의한 변제 대신에 전자화폐의 금액정보를 이전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가치이전, 전자화폐 소지인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정보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요구하는 상환청구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이용당사자간의 법적 문제점도 이러한 거래구조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 제 1 절 발행자와 이용자간의 법률관계

#### 1. 전자화폐의 발행

##### (1) 전자화폐의 발행주체

전자화폐가 화폐로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화폐 발행자가 최종소지인에게 법정통화로 환급해 줄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발행을 다른 지급수단과 같이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발행자의 판단에 맡긴다면 전자화폐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깨어져 종국적으로는 지급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닌 자유화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전자화폐의 사실상의 통용력은 대부분 전자화폐 발행자의 신용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전자화폐의 통화량은 발행자의 판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화폐의 실체인 전자정보는 제3자에 의하여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위조·변조될 가능성이 높아 전자화폐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자유로운 거래질서 유지와 경쟁원리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달을 고려한다면 발행자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sup>74)</sup> 따라서 전자화폐의 신뢰성과 상환의 안정성을 위

74) 전자화폐가 쉽게 발행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및 전자정보의 도용가능성, 소비자의 보호문제, 돈세탁의 문제, 전자화폐의 신뢰성 문제, 통화조절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金銀基, 앞의 논문, 100쪽).

하여 전자화폐 발행기관을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화폐 거래의 안전성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발행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sup>75)</sup> 이에 대하여 신기술의 활용 및 전자화폐와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기관에도 전자화폐 발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전대 전자화폐는 통화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관리와 운용은 공신력 있고, 재정적 건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sup>76)</sup> 또한 전자화폐는 일정한 가치를 저장하여 현금과 같이 거래에 이용되므로 그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행자의 파산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화폐 발행기관은 금융기관과 같이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금융기관이 전자화폐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화폐 발행자격을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것은 회피하여야 한다.

## (2) 전자화폐 발행계약

### 1) 전자화폐 발행계약의 의의

전자화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화폐 발행자와 전자화폐의 이용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화폐는 아직 법정화폐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전자화폐 발행자와 계약관계 없이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주요국가의 경우와 같이 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에 관한 이용약관이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sup>77)</sup> 이 경우에 약

75) 金銀基, 앞의 논문, 103쪽; 김택주, 앞의 논문, 100쪽; 정경영, 앞의 논문, 543쪽; 鄭快永, 앞의 논문, 250쪽.

76) 같은 취지: 鄭快永, 위의 논문, 250쪽.

77)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전자화폐의 이용자와 발행자 사이에 지로계약(Girovertrag)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Schwintowski/Schäfer, Bankrecht, 1997, 464).

관에는 최소한 전자화폐의 기록, 화폐가치 이전에 의한 사용가능성, 상환 청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sup>78)</sup>

## 2) 전자화폐 발행계약의 법적 성질

전자화폐 발행계약은 전자화폐의 성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자화폐를 채권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전자화폐의 발행시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전자화폐의 발행은 예금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전자화폐의 발행이라는 사무를 이용자가 발행자에게 위임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이라고 한다.<sup>79)</sup> 이에 대하여 자유화폐설은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전자화폐를 이용자에게 매도하고 이용자가 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다시 매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계약이라고 한다.<sup>80)</sup> 그리고 전자화폐의 종류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달리 하는 견해가 있다. 즉 통화형 전자화폐는 가치소재형 지급수단으로서 발행시에 발행자가 소유하는 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화폐 발행계약은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잔고형 전자화폐는 가치표창용 지급수단으로서 발행시에 발행자인 은행에 예금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화폐 발행계약은 예금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전자화폐의 발행과 그에 대한 지급이라는 사무를 은행이 수임하는 위임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sup>81)</sup>

생각전대 전자화폐는 현금과 유사한 결제기능을 가지는 법정화폐의 대용물로서, 이용자와 발행자간 전자화폐 발행계약은 이용자의 발행에 대한 청약과 발행자의 지급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되는 매매계약이다. 즉 전자화폐 발행계약은 이용자가 발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은행계좌상의 차감 기장을 대가로 하여 전자화폐를 취득하는 유상의 매매계약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계속적으로 전

78)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NBL』, No. 625(1997.9), 39面.

79) Schwintowski/Schäfer, Bankrecht, S. 464; Escher, WM 1997, 1182; Pichler, a.a.O., S. 16; Pfeiffer, NJW 1997, 1037.

80) 拙稿, 전자화폐, 121/2쪽; Schön, 『Prinzipien des bargeldlosen Zahlungsverkehrs』, AcP 198(1998), 422ff.

81) 정경영, 앞의 논문, 545쪽 이하.

전자화폐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행자의 전자화폐 발행은 포괄적 성질을 가진 매매계약의 이행행위가 된다고 본다.

### 3) 전자화폐 발행계약의 성립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전자화폐 발행은 발행자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화폐 발행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의 창구에 가서 전자화폐의 발급을 신청하고 발행기관이 이를 송납함으로써 발행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의 의사표시에 의하며, 반드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발행계약상의 의사의 하자에는 민법상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와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의사표시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즉 발행자와 이용자는 전자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sup>82)</sup>

### 4) 전자화폐 발행계약의 하자

전자화폐 발행계약이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무능력자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sup>83)</sup> 그러나 일정한 설립기준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사기나 강박의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sup>84)</sup> 다만 무권한자에 의한 발행계약 체결은 발행자 측에서 상대방의 무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3) 전자화폐 발행자금

전자화폐의 발행은 통상적으로 은행계좌를 기초로 하므로 전자화폐의 발행자금으로 예치한 현금 또는 예금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

82) 같은 취지: 鄭煥永, 앞의 논문, 251쪽.

83) 金銀基, 앞의 논문, 107쪽; Schön, AcP 198(1988), 424ff.

84) 拙稿, 전자자금이체, 47쪽.

여는 이용자가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하여 현금 또는 예금을 예치하고 그 대가로 전자화폐를 이전한다는 합의를 하게 되므로 그 성질은 예금과 동일하게 소비임치라는 견해<sup>85)</sup>와 소비임치 및 예금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혼합계약이라는 견해<sup>86)</sup> 그리고 전자화폐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자금이 예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견해<sup>87)</sup>가 있다.

생각전대 전자화폐 발행계약은 최종소지인이 전자화폐의 금액을 상환 청구 하면 발행자가 이를 지급할 것을 이용자에게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즉 전자화폐 발행자금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채무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발행자 입장에서 전자화폐는 발행자에 대한 이용자의 소비임치로 간주된다.<sup>88)</sup> 따라서 전자화폐 발행자금이 대하여는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민법 제702조)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sup>89)</sup>

그리고 전자화폐 발행자금이 소비임치에 유사한 혼합계약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다시 전자화폐의 발행대가인 금전이 예금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즉 전자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예치한 현금 또는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인 예금<sup>90)</sup>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85) 金銀基, 앞의 논문, 102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68쪽; 宋五植, 앞의 논문, 614쪽.

86) 拙稿, "인터넷을 통한 거래", 316쪽; 이은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比較私法」, 제5권 2호(1998.12), 125쪽.

87) 金銀基, 앞의 논문, 118쪽.

88) 拙稿, 전자화폐, 121쪽; 이경윤, 앞의 논문, 54쪽; Kümpel, NJW 1999, 313; ders., WM 1998, 367.

89) 金銀基, 앞의 논문, 116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68쪽.

90) 예금자보호법 제2조 2호는 "예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 라. 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그 자금이 예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sup>91)</sup> 따라서 전자화폐의 발행자금이 발행자 또는 가맹은행의 예금계좌에 보유되는 경우 이는 예금으로 볼 수 있지만,<sup>92)</sup> 전자화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전자화폐의 교부

전자화폐 이용자는 발행자로부터 전자화폐용 IC카드 내지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를 교부 받은 후에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화폐를 결제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IC카드 내지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발행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sup>93)</sup> 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다.<sup>94)</sup> 이러한 계약은, 첫째 IC카드 내지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가 약정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소정의 방법으로 가맹점 또는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결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발행자가 이용자에게 교부한 전자화폐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sup>95)</sup> 약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발행약관에 자신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sup>96)</sup> 한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이용

마. 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바. 제1호 하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91)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18쪽.

92)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68쪽; 이경음, 앞의 논문, 54쪽; 鄭完容, 앞의 논문, 142쪽; Escher, WM 1997, 1182; Pfeiffer, NJW 1997, 1038.

93)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발행은행이 전자화폐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사용대차계약으로 보고 있다(小澤徹夫, 前掲論文(Ⅲ), 39면).

94)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39면.

95) 이러한 경우에 발행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다(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9면).

96) 같은 취지: 김택주, 앞의 논문, 100쪽.

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발행자로부터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상으로 교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상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sup>97)</sup>

### 3. 전자화폐의 충전

이용자가 전자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로부터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에 전자화폐의 금액정보를 충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발행자가 이용자의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에 전자화폐를 충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전자화폐의 충전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직접 현금을 교부하거나 또는 자신의 계좌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 기장한 대가로 전자정보 형태의 전자화폐를 자신의 카드에 입력하는 것이므로 전자화폐의 매매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sup>98)</sup> 이에 대하여 통화형 전자화폐의 충전은 전자화폐 발행계약에 따른 이행행위이며, 잔고형 전자화폐의 충전은 매매의 이행행위라고 하기 보다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임계약의 이행행위라는 견해가 있다.<sup>99)</sup> 전자화폐의 충전은 배타적 관리 가능한 금액정보의 이전과 금전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매매계약은, 첫째 약정된 금액의 전자화폐가 입력되어야 하며, 둘째 그 전자화폐가 소정의 방법에 따라 가맹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대한 결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전자화폐의 가치를 언제나 상환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로서 통용되지 않는 정보가 충전되거나 또는 충전된 금액이 약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용자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발행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약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전자화폐의 충전은 매매계약이므로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담보책임(민법 제580

97) 정경영, 앞의 논문, 545쪽.

98) 拙稿, 전자화폐, 122쪽;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0面;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14面; Escher, WM 1997, 1182.

99) 정경영, 앞의 논문, 547쪽.

조, 제574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전자화폐의 불완전한 충전에 대하여 발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행자는 전자화폐의 충전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당사자의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sup>100)</sup> 왜냐하면 전자화폐의 충전은 금액정보가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에 저장되어야 완료되기 때문에 발행자는 금액정보의 오입력에 과실이 없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 4. 전자화폐의 파손

##### (1) 서

전자화폐의 파손은 전자화폐의 금액정보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변경되어 전자화폐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강한 자력에 의하여 전자기억매체의 내용이 변경되어 전자화폐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가 파손되어 전자화폐의 금액정보를 읽어낼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전자화폐 발행의 법적 성질을 매매계약으로 보는 경우 전자화폐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즉 전자화폐의 파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자화폐의 파손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sup>101)</sup> 그러나 전자화폐가 파손되었지만 전자화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파손된 전자화폐를 가지고 현금 또는 예금을 상환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정보가 불완전하므로 발행자는 전자화폐의 상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102)</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가 파손된 경우에 전자화폐에 저장된 금액가치를 발행자가 부담이득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전자화폐가 파손된 경우에 전자화폐의 상환 청구에 대한 문제는 전자화폐의 잔액을 알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당사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sup>103)</sup>

100)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0面.

101) 拙稿, 전자화폐, 125쪽;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1面.

102)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9面.

103) 이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위험책임을 발행자에게 귀속시

## (2) 전자화폐 파손에 대한 책임

## 1) 잔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전자화폐가 파손되었지만 전자화폐의 잔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잔액의 반환 또는 전자화폐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sup>104)</sup> 이 때에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서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가 파손된 경우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재발행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sup>105)</sup> 발행자는 이용자에게 확인된 잔액을 반환 또는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이용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전자화폐를 사용하였으나 파손된 경우, 예컨대 IC카드가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잔액의 반환 또는 IC카드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 이용자는 전자화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sup>106)</sup> 나아가 전자화폐를 통상의 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파손되는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2) 잔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자화폐가 파손되어 전자화폐의 잔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발행자는 발행 이후 전자화폐의 사용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 이 때에 전자화폐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잔액의 입증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잔액을 입증하면 발행자는 이용자에게 입증된 잔액을 반환 또는 재발행 하여야 한다.<sup>107)</sup> 그러나 이용자의 과실에 기해

---

켜 환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약관의 정비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 라는 견해도 있다(洪起沈/金鍾敏, 앞의 논문, 65쪽).

104) 批稿, 전자화폐, 125쪽;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39面;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9面. 독일의 전자화폐인 Geldkarte는 이용약관에서 카드가 기능분탈일 경우 미사용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5)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가 파손된 때에는 발행자는 소정의 금액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발행한다는 약관이 있다.

106)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1面.

107) 小澤徹夫, 上掲論文(Ⅲ), 41面.

서 전자화폐가 파손된 경우 발행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이용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전자화폐를 사용하였으나 변형·손상된 경우, 예컨대 IC카드가 장비의 하자 또는 약한 자력에 의해서도 불량인 되는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제1차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sup>108)</sup> 제2차적으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때에 발행자는 이미 사용되었다고 입증된 금액만 저장액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5.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 (1) 서

전자화폐의 위조라 함은 발행자 이외의 무권한자가 진정한 전자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전자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위조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정보는 "진정한 전자화폐"와 구분하여 "위조된 전자화폐"라고 부르며, 생성은 복사를 포함한다. 다만 발행자가 예정하고 있는 통상의 사용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복사는 복사를 행하는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로부터 복사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위조에 포함되지 않는다.<sup>109)</sup> 그리고 "진정한 전자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전자정보"는 변제수령자의 기억장치에 보존될 때 단말기 등 변제수령자가 통상 사용하는 잔고확인 방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변조는 발행자 이외의 무권한자가 진정한 전자화폐를 가공하여 금액정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변조자가 변조 전의 진정한 전자화폐에 금액정보를 증가시켜 부진정한 전자화폐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변조자가 스스로 발행자에게 상환 청구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변조된 부진정한 전자화폐를 이전하는 경우에 위조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자화폐가 위조·변조되면 주로 전

108) 이러한 경우에 발행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다(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9面).

109)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上掲論文, 25面.

전자화폐 발행자가 손해를 보게 되지만 부진정한 전자화폐가 사용됨에 따라 결국 정보를 도용 당한 이용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의 경우에 이용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sup>110)</sup>

한편 전자화폐의 위조·변조와 관련하여서는 전자화폐의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진다.<sup>111)</sup> 즉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타인이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일 타인이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네트워크를 통하여 위·변조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있어서는 위조나 변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적다. 이에 대하여 카드형 전자화폐는 오프라인으로 결제되므로 전자화폐가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화폐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화폐의 사용에 따른 손실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 (2) 전자화폐의 위조·변조에 대한 책임

### 1) 통화형 전자화폐의 경우

통화형 전자화폐는 개개의 화폐정보가 다른 정보와 구별되는 형태로 기억 보존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이전된다. 즉 이용자의 전자화폐와 가맹점의 기억장치는 위조된 전자화폐와 진정한 전자화폐를 별도의 형태로 보존하고, 이를 이전할 경우에도 독립성을 가지고 이전하기 때문에 위조된 전자화폐와 진정한 전자화폐가 혼화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래의 유가증권의 위조와 유사한 모습을 띤다.

통화용 전자화폐의 금액정보가 위조된 경우에 위조된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또는 가맹점은 발행자에 대하여 위조된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발행자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전자화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sup>112)</sup> 왜냐하면 발행자

110) 金銀基, 앞의 논문, 108쪽.

111) 鄭快永, 앞의 논문, 253쪽.

112) 拙稿, 전자화폐, 127쪽; 金銀基, 앞의 논문, 108쪽; 김택주, 앞의 논문, 104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71쪽.

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주체로서, 전자화폐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sup>113)</sup>를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전자거래기본법 제14조 참조). 또한 전자화폐 이용자는 전자화폐의 금액정보가 자기의 보존장치(device)에 표시되는 내용 이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위조된 전자화폐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이용자는 전자화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sup>114)</sup> 그러나 발행자는 위조된 전자화폐를 생성한 자와 전자화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자화폐 가치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전자화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및 상환청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sup>115)</sup>

전자화폐 이용자가 가맹점에게 채무의 변제로서 이전한 전자화폐가 위조된 전자화폐인 경우에 위조된 전자화폐의 이전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 때에 가맹점은 이전된 전자화폐의 금액정보를 진정한 전자화폐로 인식하고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점이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조된 전자화폐의 수령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sup>116)</sup> 여기서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므로 가맹점은 여전히 이용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금액정보가 위조된 전자화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가맹점에 이전한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가맹점이 금액정보가 위조된 전자화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착오 내지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113) 예컨대, K-Cash카드는 IC칩에 COS칩 운영시스템과 8Kbite의 메모리를 갖추어 보안알고리즘을 채택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4) 鄭快永, 앞의 논문, 253쪽;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6面.

115) 독일에서는 1997년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BGH WM 1997, 910ff.)이래 전자화폐를 포함한 은행거래에서 무과실에 의한 위조의 경우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던 것을 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였다(Schön, AcP 198(1998), 426).

116)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6面.

## 2) 잔고형 전자화폐의 경우

잔고형 전자화폐는 IC카드나 네트워크형 소프트웨어에 기록된 금액정보를 모두 복사하여 상환 청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조된 전자화폐가 이전된 경우에 진정한 전자화폐와 혼화되어 어느 부분이 진정한 전자화폐인지 알 수 없게 되며, 또한 위조된 전자화폐가 진정한 전자화폐와 함께 이전되므로 이전된 전자화폐가 진정한 전자화폐인지의 구별도 어렵다. 이와 같이 잔고형 전자화폐는 통화용 전자화폐와 달리 위조된 전자화폐와 진정한 전자화폐가 혼화하는 문제가 생긴다.

진정한 전자화폐가 위조된 전자화폐와 혼화되면 기본적으로는 위조된 전자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전자화폐와 위조된 전자화폐가 혼화된 금액정보는 발행자에게는 진정한 전자화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환 청구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부진정 전자화폐로 된다. 그러므로 발행자는 가맹점이 위조된 전자화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전자화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맹점이 중과실로 전자화폐를 상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위조된 전자화폐가 혼화되기 전에 가졌던 진정한 전자화폐에 대하여도 상환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발행자가 진정한 화폐가치를 부담이득 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sup>117)</sup> 그러므로 위조된 전자화폐가 이전되기 전에 가맹점의 전자화폐에 진정한 화폐가치가 존재한 경우와 위조된 전자화폐가 혼화된 이후에 가맹점이 이전 받은 진정한 전자화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첫째, 혼화되기 전에 가맹점이 가진 진정한 전자화폐가 혼화에 의하여 부진정 전자화폐로 된 경우에 가맹점은 혼화 이전에 존재한 진정한 화폐가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말기 등 이전장치의 하자에 의하여 위조된 전자화폐가 이전된 경우 가맹점은 이를 방지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발행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sup>118)</sup>

117)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7面.

118) 拙稿, 전자화폐, 128쪽.



둘째, 위조된 전자화폐가 혼화된 이후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제3자로부터 진정한 전자화폐를 이전 받아 부진정 전자화폐의 금액정보가 증가한 경우이다. 이 때에 위조된 전자화폐가 혼화된 이후 진정한 전자화폐 이전 사이에 이용자 또는 가맹점의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sup>119)</sup> 여기서 전자화폐 소지인의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소지인이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위·변조된 경우, 소지인이 전자화폐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시킴으로써 위·변조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전자화폐 이용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로서 부진정 전자화폐를 이전한 경우에 위조된 전자화폐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아가 이용자가 과실로 부진정 전자화폐를 가맹점에 이전하였고 이에 의하여 가맹점의 진정한 전자화폐가 부진정하게 된 경우 가맹점은 진정한 전자화폐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6.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 (1) 서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은 전자화폐 소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또는 소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전자화폐의 점유가 이전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전자화폐 소지인의 의사에 기함이 없이 전자화폐의 금액정보가 이전되거나 또는 전자화폐를 도난 당한 경우 등이다. 그런데 전자화폐의 도난은 파손 또는 위조·변조와 달리 전자화폐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용계약 내지 가맹점계약상 반환 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발행자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 소지인의 반환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분실·도난 당한 전자화폐를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119)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7/8面.

가 있다. 이는 다시 전자화폐를 잃어버린 경우와 전자화폐에 입력된 화폐정보만 잃어버린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2)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

1) 전자카드 자체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전자화폐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카드 자체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이는 현금소지인이 현금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와 같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비계좌형 전자화폐나 오프라인형 전자화폐의 경우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소지인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전자화폐는 실제로 현금과 차이가 없으므로 제3자가 발행자에 대하여 상환 청구를 한 경우 발행자나 가맹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어 면책된다(민법 제470조 참조).<sup>120)</sup> 즉 피해자는 발행자에게 전자카드의 반환, 소지인에 대한 상환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이 분실·도난 당한 전자화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250조 단서 유추적용).<sup>121)</sup> 예컨대, 이용자 甲이 이용자 乙에게서 훔친 전자화폐를 가지고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해자 乙은 도난 당한 전자화폐를 수령한 가맹점 또는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계좌형 전자화폐나 온라인형 전자화폐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지급결제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손실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전자화폐에 대하여는 전자카드의 분실·도난신고 전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120)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70쪽; 鄭快永, 앞의 논문, 254쪽;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9面.

121)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6面.

2) 전자화폐의 금액정보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전자화폐 소지인이 전자화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자화폐에 저장된 금액정보를 도난 당한 경우이다. 예컨대, 전자화폐를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보관하여 전자화폐의 금액정보를 도난 당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매도된 전자화폐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그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발행자가 구축한 전자화폐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며, 또한 이용자는 금액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화폐의 소지를 통한 관리에 불과하므로 이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전자화폐 이용자가 전자화폐의 이용약관 및 전자화폐 취급규정을 준수하였고, 그리고 전자화폐의 도난·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면 발행자가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sup>122)</sup>

제 2 절 이용자와 가맹점간의 법률관계

1. 서

전자화폐의 이전은 전자화폐가 이용자의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로부터 가맹점의 단말기로 또는 다른 이용자의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자화폐의 가치이전을 뜻하므로 금전채무의 변제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sup>123)</sup> 그리고 이용자가 가맹점에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전자화폐로 결제하면 거래가 완료되므로 이용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상환 청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sup>124)</sup> 그러나 금전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면 매수인인 이용자는 매도인인 가맹점에 전자화폐로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또는 전자화폐에 갈음하여 현금통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가맹점에 이전한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2) 같은 취지: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6面.

123)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쪽.

124) 같은 취지: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0面.

## 2. 전자화폐의 이전

### (1) 이전의 법적 성질

전자화폐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이용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수령을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무의 변제로써의 전자화폐의 이전이 가맹점의 의사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 내용에 따른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는다. 즉 전자화폐는 현금 대용의 화폐이지만 그 자체가 강제통용력을 가진 화폐가 아니므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을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는 전자화폐에 의한 채무소멸을 채무의 본래의 내용에 따른 변제로 보는 견해<sup>125)</sup>와 전자화폐에 의한 채무변제는 대물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26)</sup>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발행자와 이용자 및 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에 전자화폐의 이전에 의하여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킨다는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자유화폐이며, 또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설립된 발행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하므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변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sup>127)</sup> 이에 대하여 후자의 견해는 전자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어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지급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전자화폐에 의한 변제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현금에 비하여 금액정보의 위조·변조, 발행자의 파산 등 위험이 따르므로 변제에 갈음한 이행이라는 견해가 있다.<sup>128)</sup>

생각전대 채권자인 가맹점이 금전채무의 성립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자화폐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전에 동의한 경우 또는 상관습과 거래관행의 고려 하에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인 이용자가 채권자인 가맹점에게 전자화폐를

125) 拙稿, 전자화폐, 124쪽; 森田宏樹, 前掲論文(4), 34/5面.

126) 金銀基, 앞의 논문, 104쪽; 姜택주, 앞의 논문, 102쪽; 정경영, 앞의 논문, 549쪽; 鄭快永, 앞의 논문, 251쪽;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14面.

127)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쪽.

128)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69쪽; 정경영, 앞의 논문, 549쪽; Escher, WM 1997, 1182; Kumpel, WM 1998, 369; Pfeiffer, NJW 1997, 1038.

이전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의무를 면한다. 여기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는 처음부터 대체금 지급을 선택채권으로 합의하거나(민법 제380조 참조) 또는 당사자가 현금지급을 계약상 배제한 경우 이행의 단독 형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전자화폐 이용자가 채권자인 가맹점에게 금전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전자화폐를 이전하는 것은 변제에 갈음하는 이행이 아니라 이러한 계약의 구속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전의 완료시점

금전채권의 변제로서 전자화폐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어느 시점에 지급이 완료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완료는 거래당사자의 위험부담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는 전자화폐의 이전 그 자체로서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129)</sup>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당사자간 채무가 소멸하므로 전자화폐의 이전시점과 결제시점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가맹점이 전자화폐를 상환 청구할 때까지 발행자의 파산 등에 따른 상환위험은 가맹점이 부담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전자화폐의 발행자나 가맹은행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 즉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 정보가 입력된 때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sup>130)</sup>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이전이 결제시점과 달라서 가맹점의 계좌로 상환금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발행자 파산 등의 상환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 이외에도 지급완료의 문제는 전자화폐 거래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131)</sup> 이 견해에 따르면 이용자는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을 가맹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기장 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위험은 없다.<sup>132)</sup>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

129) 金銀基, 앞의 논문, 106쪽; 정경영, 앞의 논문, 252쪽; 鄭快永, 앞의 논문, 551쪽; 小澤徹夫, 前掲論文(I), 『NBL』, No. 623(1997.8), 10面.

130)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69쪽; 이경윤, 앞의 논문, 60쪽; 이은영, 앞의 논문, 125쪽.

131) 鄭完溶, 앞의 논문, 149쪽.

132) Escher, WM 1997, 1182.

로는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되어 전자화폐의 특색이 없게 된다.

생각전대 가맹점은 발행자와 가맹점계약을 통하여 전자화폐를 대금결제방법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전자화폐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 자체의 이전에 의하여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금전채권은 소멸된다. 다만 일반이용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지만 거래상 대방이 전자화폐의 수령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최종적인 결제위험은 전자화폐를 이전 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sup>133)</sup> 다만 전자화폐가 위조·변조되어 상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에 대하여 진정한 전자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

### (3) 이전의 의사표시의 하자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전자화폐 이전의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화폐의 이전을 이용자의 채무변제로 보는 견해는 이러한 권리의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sup>134)</sup> 왜냐하면 변제는 준법률행위로서 취소 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전자화폐의 이전을 대물변제로 보는 견해는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sup>135)</sup>

생각전대 전자화폐는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결제가 사실상 종료된다. 그리고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는 비대면거래로 행하여지므로 상대방의 무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착오나 사기, 강박이 행하여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급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133)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06쪽.

134) 金銀基, 앞의 논문, 106쪽.

135) 김택주, 앞의 논문, 105쪽.

것이며,<sup>136)</sup> 이러한 의사표시가 문제되는 경우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sup>137)</sup>

한편 전자화폐 소지인이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전자화폐의 지급지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상대방의 계좌로 금전적 가치가 이전된다. 이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러한 지급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전자카드의 이전

전자화폐의 이전은 전자화폐가 이용자의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로부터 가맹점의 단말기로 또는 다른 이용자의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로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가 제3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전자화폐의 금액정보가 저장된 전자카드를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자는 제3자에게 전자정보의 접근에 필요한 PIN등의 접근정보를 알려 주어야 제3자가 이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발행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전자카드 자체의 이전은 약관에서 이를 금지할 경우 그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나 통화형 전자화폐의 경우 현금 대용의 전자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카드는 전자지갑의 기능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sup>138)</sup> 그러나 잔고형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이용자에 대한 지급약속이므로 약관에서 전자카드 자체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이전행위는 적어도 발행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전자화폐 이전의 효력

#### (1) 가맹점의 수령거절

전자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현금과 같은 강제통용력이 없다. 그러므로 가맹점이 전자화폐에 의한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전자

136) 이러한 이유로 전자화폐 발행자의 선의·무과실 거래에 대하여는 발행자 또는 시스템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金銀基, 앞의 논문, 107쪽).

137) 같은 취지: 鄭煥永, 앞의 논문, 252쪽.

138) 같은 취지: 정경영, 앞의 논문, 551/2쪽.

화폐에 의한 지급은 효력이 없다. 여기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 유효하려면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발행자가 가맹점계약을 통하여 가맹점의 전자화폐 수령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가맹점이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가맹점은 발행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거래의 정착과 지급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sup>139)</sup>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2) 원인관계의 효력소멸

### 1) 원인관계 소멸의 효력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원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이용자는 가맹점에 전자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매매대금의 변제로서 이용자가 가맹점에 전자화폐를 지급한 이후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와 가맹점간의 전자화폐 이전을 대물변제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대물변제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대물변제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견해에서도 가맹점에 이전된 당해 전자화폐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화폐정보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한다.<sup>140)</sup> 그러나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을 채무의 본래의 내용에 따른 변제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원인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가맹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즉 현금통화의 경우 통화매체의 점유이전이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므

13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0) 정경영, 앞의 논문, 551쪽; 洪起汝/全鍾鎰, 앞의 논문, 69쪽.



로 현금지급의 원인관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한 자는 수령자에게 지급한 당해 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sup>141)</sup>

생각전대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에도 현금통화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약정이 존재하고,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매매나 서비스제공과 같은 원인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 실시간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에는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sup>142)</sup>

## 2) 원인관계 소멸에 따른 반환문제

전자화폐 이전의 원인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가맹점에게 전자화폐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개방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를 직접 이전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를 직접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의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능하다.<sup>143)</sup> 그러므로 폐쇄형 전자화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금이체를 하거나 그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sup>144)</sup>

## (3) 전자화폐의 선의취득

전자화폐의 선의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과 요건이 문제로 된다. 먼저 전자화폐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는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화폐를 금권 또는 자유화폐로 법리 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물건으로서의 개성을 잃고 추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유통되므로 선의취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

141) 拙稿, 전자화폐, 125쪽.

142) 같은 취지: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69쪽; 鄭煥永, 앞의 논문, 252쪽;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17面.

143)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거래는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화폐의 반환을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일반원칙에 따르기 보다 실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金銀基, 앞의 논문, 115쪽).

144) 鄭煥永, 앞의 논문, 254쪽.

화폐 취득자는 선의·무과실을 묻지 않고 전자화폐의 소유자가 된다. 이에 반하여 전자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는 선의취득의 문제가 생긴다. 즉 전자화폐 취득자는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를 선의취득 할 수 있다고 한다.<sup>145)</sup>

생각전대 전자화폐에는 거래의 신속성과 결제의 즉시성이 요구되며, 법정통화의 대용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환수단으로서의 금전과 같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전자화폐의 담보제공

전자화폐는 그 자체에 일정한 금액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시에는 비밀번호 등의 접근정보에 의하여 확인을 거치는 등의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담보권자가 전자화폐가 들어 있는 전자카드를 직접 점유함으로써 채무자가 전자화폐에 내재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치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전자카드의 이용에 필요한 접근정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전자카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것에는 일종의 질권이 설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6)</sup>

#### (5) 전자화폐 이용자의 파산

전자화폐 이용자가 매매대금의 변제로서 가맹점에 전자화폐를 이전한 이후 이용자가 파산한 경우 이용자의 파산관재인은 가맹점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대하여 이미 이전한 전자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금통화의 경우 이용자의 파산관재인은 가맹점에게 이미 지급한 당해 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전자화폐도 자유화폐로서 현금통화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전자화폐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sup>147)</sup> 왜냐하면 가맹

145) 김택주, 앞의 논문, 105쪽; 洪起洙/全鍾鉉, 앞의 논문, 65쪽.

146) 정경영, 앞의 논문, 552쪽.

147) 拙稿, 전자화폐, 129쪽.

점은 전자화폐를 금전채권의 변제로 간주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금전채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파산관재인은 더 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제 3 절 발행자와 가맹점간의 법률관계

#### 1. 서

전자화폐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제시하고 전자화폐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 청구하면 발행자는 전자화폐의 금액정보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예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환금액이 이용자 또는 가맹점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결제는 종료하게 된다.<sup>148)</sup> 그러나 전자화폐는 당초에는 현금 또는 예금을 대가로 발행되었지만 발행된 이후에는 예금과 분리되어 이전되며, 또한 대가로 이미 예치한 현금 또는 예금이 발행자에게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되므로 전자화폐의 점유는 현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제단계에서는 전자화폐의 제시, 상환, 결제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각 단계마다 발행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당사자 사이의 위험부담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

#### 2. 전자화폐의 상환청구

##### (1) 상환청구의 의의

전자화폐의 상환이란 발행자가 이용자 내지 가맹점에게 진정한 전자화폐와 대가로 현금 또는 예금잔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자화폐의 저장과 반대로 발행자가 이용자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전자화폐를 매수하는 것이다.<sup>149)</sup> 전자화폐의 상환은 현재 전자화폐가 강제통용력을 부여받지 않는 한도에서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가

148) 이경윤, 앞의 논문, 62쪽. 이를 발행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담보계약 인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Escher, WM 1997, 1180; Kümpel, WM 1988, 369).

149) 小澤徹夫, 前掲論文(Ⅲ), 45面.

상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상환가능성은 당해 전자화폐를 발행한 발행자에 의해서만 보장되어서는 안되고 전자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 나아가 외국의 금융기관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sup>150)</sup>

## (2) 상환청구의 종류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의 내용은 이용자가 발행자와 체결한 전자화폐 이용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므로 상환청구의 내용은 전자화폐제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할 것이나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sup>151)</sup> 첫째, 발행자가 이용자 또는 가맹점의 예금 계좌에 예금하는 방식이다. 즉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자화폐와 동일한 금액을 이용자 또는 가맹점의 계좌에 예금으로 상환하고 현금에 의한 상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행자에게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둘째, 발행자가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예금에 의한 상환뿐만 아니라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가맹은행에서도 전자화폐의 상환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초국가적으로 상환성이 보장되는 경우로 발행자가 발행한 전자화폐 뿐만 아니라 외국의 발행자가 발행한 전자화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상환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첫째의 유형은 전자화폐가 가지는 유통성과 편리성에 제약이 있으므로 전자화폐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둘째의 유형과 같이 가맹은행이라면 어느 은행에서도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유통성 및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자화폐는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이용자에게는 편리하지만 가맹은행 사이에는 자금정산의 문제 및 예금이 없는 은행에서도 상환이 가능하게 되면 예금과의 대응관계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 나아가 셋째 유형의 경우 전자화폐의 범용성 및 유통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서는 전자화폐의 기술적인 호환성, 각 국가간의 효율적인 결제제

150) 정경영, 앞의 논문, 553쪽.

151) 김택주, 앞의 논문, 109/10쪽; 정경영, 앞의 논문, 553/4쪽; 鄭完溶, 앞의 논문, 149쪽.

도, 그리고 외환법상의 문제나 준거법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둘째 유형의 상환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전자화폐의 상환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법적 문제점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 (3) 상환청구의 법적 성질

전자화폐를 가치소재형 전자화폐로 파악하는 경우 상환청구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상환청구권은 전자화폐의 최종소지인이 이를 현금으로 전환시키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전자화폐의 발행시점부터 전자화폐에 수반되어 유통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상환청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발행자가 이용자나 가맹점에 대하여 가지는 무인적 지급청구권의 이행이라는 견해가 있다.<sup>152)</sup> 이에 대하여 상환청구는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자신이 보유하는 전자화폐를 발행자에게 이전하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한다는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전자화폐의 매매라는 견해가 있다. 그 이외에 전자화폐의 발행은 재매매의 예약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이므로 상환청구권은 재매매를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53)</sup>

생각전대 전자화폐의 상환은 발행자와 이용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며, 특히 상환은 전자화폐라는 매매의 목적이 매수인의 청구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이전되므로 재매매를 포함하는 매매라고 할 수 있다.<sup>154)</sup>

### (4)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전자화폐를 현금 대용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자화폐가 표창하고 있는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로 된다. 즉 전자화폐를 금권 또는 자유화폐로 법리 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전자화폐를 금액가치가 내장된 전자화폐를 물권적 성질을 가진 무형의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법

152) Kümpel, WM 1998, 367.

153) 정경영, 앞의 논문, 555쪽.

154) 같은 취지: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前掲論文, 25面.

적 성질을 유가증권으로 법리 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전자화폐의 발행을 상사채권으로 보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상법 제64조), 지명채권이나 지시채권으로 보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이외에 전자화폐의 상환청구권을 재매매계약의 예약완결권으로 보는 견해는 그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형성권의 일반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다.<sup>155)</sup>

생각전대 전자화폐는 현금 대용수단으로 사용되는 물권적 성질의 무형적 재산권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3. 발행자의 파산

#### (1) 서

전자화폐의 상환에 있어서는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전자화폐 소지인인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자화폐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발행자가 파산하면 이러한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이용자 또는 가맹점은 전자화폐의 금액정보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발행자의 파산위험은 전자화폐가 현금대용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전자화폐 소지인의 파산채권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파산에 따른 당사자간 손실부담 및 발행자 파산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파산채권자의 법적 지위

전자화폐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 전자화폐 이용자나 가맹점은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파산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소지인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155) 정경영, 앞의 논문, 555쪽.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파산법 제50조 제1항). 이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이행을 선택하면 전자화폐 소지인은 파산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이행을 선택하면 상환 청구된 전자화폐 금액이 파산재산에서 감소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전자화폐 소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화폐의 금액가치가 소멸된다. 이 경우에 전자화폐 소지인은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파산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파산법 제51조 제1항). 즉 전자화폐를 상환받을 수 없게 된 이용자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법에 의한 보호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전자화폐 발행자금에 대하여 예금보증을 적용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자화폐의 상환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전자화폐 소지인의 손실부담

전자화폐는 이용자가 발행자에게 현금 또는 예금을 미리 예치하고 그 대가로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후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게 전자화폐 금액을 상환 청구하는 법적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각 이용자 및 가맹점은 발행으로부터 상환까지 사이에 발행자의 파산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 이용자와 가맹점 중에서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sup>156)</sup> 전자화폐를 금권 또는 자유화폐로 구성하는 견해에서는 전자화폐의 금액정보 자체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통화매체로 보기 때문에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전자화폐를 수취한 시점에 금전채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이전받은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전자화폐를 수취한 가맹점이 부담하게 된다.<sup>157)</sup>

156) 이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는 전자화폐 거래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鄭完溶, 앞의 논문, 149쪽).

157) 이러한 경우 발행자의 파산위험은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어 가혹하므로 전자화폐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 전자화폐 이용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택주, 앞의 논문, 102/3쪽).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전자화폐를 수취하더라도 금전채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은 전자화폐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전자화폐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이미 전자화폐 발행자금을 선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를 이전한 가맹점에게 다시 금전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중변제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를 자유화폐로 구성하는 견해에 따라 가맹점이 전자화폐를 수취한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다시 금전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가맹점계약에서 상환 청구의 불능에 대한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발행자 파산의 방지대책

전자화폐 발행자가 파산하여 전자화폐의 상환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면 전자화폐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의 보급 및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소지인을 발행자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첫째 예금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보험은 발행자의 파산위험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의 위조 등에 대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화폐가 예금계좌와 연계되는 경우 전자화폐는 이용자의 발행자에 대한 예금채권이므로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sup>158)</sup> 그러나 현재 전자화폐는 대부분 소액의 결제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면 오히려 전자화폐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둘째, 예금을 신탁예금, 특별예금, 담보부예금 등으로 별도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즉 전자화폐 발행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발행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는 제도이다.<sup>159)</sup>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공탁금액과 관련하여 예금보험제도와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셋째, 전자화

158) 金銀基, 앞의 논문, 118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71쪽; 鄭完溶, 앞의 논문, 149쪽.

159) 金銀基, 앞의 논문, 119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71쪽.



폐 발행자 사이에 전자화폐 상환채무를 분담하는 방안이다. 즉 전자화폐 발행자 중의 1인이 파산한 경우 다른 발행자나 가맹은행이 연대하여 파산한 발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를 구축한다면 모든 발행자 내지 가맹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은 보호될 것이다.

생각전대 발행자의 파산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정책의 문제이지만 발행자간 상호보증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전자화폐 발행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채무의 건전성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 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발행자가 취득한 발행자금의 운영방법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sup>160)</sup>

---

160) 洪起汝/全鍾鉉, 앞의 논문, 70쪽.

## 제 5 장 전자화폐 이용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전자화폐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인증기관 등의 관계자가 이용관계에 개입하더라도 이용관계의 기본구조는 발행자, 이용자, 가맹점과 이들의 지급을 중개하는 지급중개인 등 3당사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전자화폐 이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전자화폐 이용에 대한 관계법령 적용가능성 및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전자화폐 발행

#### 1. 전자화폐 발행에서의 개선방안

##### (1) 전자화폐 발행자

전자화폐를 어느 기관에서 발행하게 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sup>161)</sup> 여기서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으로는 중앙은행, 금융기관, 비금융기관이 고려된다.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발행자로 되는 경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신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가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의 안전성 및 신기술 활용의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일반 금융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전자화폐 이용에 따른 신용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융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화폐 운용에 필요한 신기술 활용이 장점으로 제시되지만 신용위험이 높아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게 된다.

생각전대 전자화폐는 통화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관리와 운용은 공신력 있고 재정적 건전성과 업무능력의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전자화폐는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여 현금과

161) 미국의 경우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연방 EFT의 공정성 확보의 규제와 각 주 법상의 재무의 건전성 규제에 맡겨 전자화폐의 발행을 희망하는 기관에 의존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은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전자화폐 발행자를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같이 이용되므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금의 안전성과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행자의 파산시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반사정을 고려하여<sup>162)</sup> 전자화폐 발행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상당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63)</sup> 예컨대, 한국은행 주도로 개발중인 K-캐시는 발행기관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 (2) 전자화폐 발행계약

전자화폐가 이용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자와 이용자 사이의 발행계약 및 가맹점과 발행자 사이의 가맹점계약이 요건으로 된다. 여기서 전자화폐는 모든 사람에게 화폐가치를 인식시켜 강제적으로 통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 발행자를 중심으로 계약에 의해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제한된 범위에서 현금 대용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발행계약에서는 계약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기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다. 이와 같이 전자화폐 발행계약은 당사자의 계약, 즉 전자화폐 발행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계약상의 문제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화폐의 이용관계는 여러 가지의 형태에 맞추어 필요시에 계약조건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자화폐 이용관계의 법적 기초가 되고 있는 전자화폐 이용계약 및 가맹점계약을 고려하여 가칭 "전자화폐이용표준약관"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sup>164)</sup>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는

162) 전자화폐의 발행은 전자화폐의 범용성 및 통화대용성, 전자정보의 가변성, 상거래의 안전성, 신뢰확보의 필요성, 통화정책의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자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법상으로 한시적으로 발행주체들 은행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정경영, 앞의 논문, 543/4쪽).

163)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03쪽; 김택주, 앞의 논문, 100쪽; 鄭煥永, 앞의 논문, 250쪽.

164) 전자화폐 지금에 따른 사법상의 법률관계들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전자화폐 이용자간의 이용관계 및 이용효과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화폐 이용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전자화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이 법률에 따라 전자화폐의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인가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그러한 표준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sup>165)</sup>

## 2. 관계 법령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법제화 방향

### (1) 발행자금 관련 문제

#### 1) 은행법과의 관계

은행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화폐 발행자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달라진다. 즉 전자화폐 발행자를 금융기관에 한정하는 경우와 비금융기관도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화폐의 발행자를 금융기관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다시 전자화폐의 발행자금을 은행의 예금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전자화폐를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금이 은행의 예금계좌에 보유되는 경우와 예금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에 보유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발행자가 전자화폐의 발행대금을 예금계좌에 보유하는 경우 전자화폐 발행자는 은행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은행업<sup>166)</sup>을 수행하는 자로서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자화폐의 발행업무는 은행법 제27조에 규정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전자화폐 발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화폐의 발행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 은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업무 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은행에 부수하는 업무로 삼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화폐의 발행자금이 예금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에 보유되는 경우 발행자금을 예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65) 같은 취지: 이경윤, 앞의 논문, 56쪽.

166) 은행법 제2조 1호는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무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한편 비금융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자화폐 이용자가 전자화폐 발행대가로 지급한 자금을 이용자 내지 가맹점에게 상환할 때까지 은행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와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전자화폐를 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자화폐의 발행자금은 예금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법은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은행업무 중의 하나인 예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은행법 제 8조 제1항). 즉 전자화폐의 발행자금을 예금으로 법정하지 않으면 전자화폐 발행자는 발행자금의 수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발행자금을 은행의 예금계좌에 예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예금자보호법과의 관계

전자화폐 발행자금이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소비자인 전자화폐 이용자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금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예금자보호법 제2조 7호에 규정된 보험사고<sup>167)</sup>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자금이 예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먼저 전자화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자금이 예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만일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예금계좌에 연결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예금으로 보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금으로 보기 어려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행자의 파산의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그가 발행한 전자화폐 중 상환되지 아니한 전자화폐 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게 하거나<sup>168)</sup> 이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등의 지급

167) 예금자보호법 제2조 7호는 "보험사고"를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16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

보증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sup>169)</sup> 나아가 입법적으로는 전자화폐 발행자금의 예금 해당여부를 관련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전자화폐 관련 문제

### 1) 한국은행법과의 관련 문제

전자화폐는 은행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기보다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유가증권과 같이 재산이 증권에 화체된 것이 아니라 가치저장 장치에 저장된 전자적 가치 그 자체이므로 주화나 지폐와 같은 통화로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제47조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규정하여 한국은행만 법정통화에 대한 발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와 같이 강제통용력 있는 법정화폐는 아니고, 실제 거래에서 금전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유화폐라고 할 수 있다.<sup>170)</sup>

한편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 내의 유일한 법화로서 공사 일체의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여 한국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지닌 지급수단임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강제통용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가치저장적 지급수단이므로 통화매체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문제

전자화폐는 이용자가 발행자에게 전자화폐 발행대가로 현금 또는 예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IC카드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는 측면에서 선불카드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전자화폐는 일정금액을 전자화폐에 저장하여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불카드와 다르다.

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69)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18/9쪽.

170)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91쪽.

그러나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가의 선금으로 발행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화폐정보가 기록되고, 선불카드와 같이 증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드형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화폐가 선불카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화폐는 동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전자화폐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행위는 동법 제13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유사수신행위<sup>171)</sup>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한편 카드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운용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도 동법에 규정된 선불카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표”라는 용어가 카드의 실물이 없는 소프트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정보도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불카드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온라인상의 정보전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는 선불카드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과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화폐는 해석상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선불카드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sup>172)</sup> 그러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선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종류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대상이

17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172) 이경윤, 앞의 논문, 58쪽.

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동법 제2조 8호의 선불카드에 관한 규정에서 전자화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3) 전자거래기본법 관련 문제

전자화폐의 발행 및 상환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지급도 전자적 형태의 화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전자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자화폐를 전자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자화폐의 발행 및 지급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먼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1호의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지급수단을 의미하는 전자화폐도 포함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생각전대 전자문서의 기능 속에는 화폐정보의 전달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별도로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5호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화폐의 발행 및 이전도 이러한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거래의 지급수단인 전자화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을 가능케 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sup>173)</sup> 그리고 전자화폐는 전자적 지급수단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규율이 필요하면 전자자금이체법이나 현재 입법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74)</sup>

173)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제11조는 사이버몰에서 대금지급 방법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온라인 무통장 입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수령시 대금지급 등을 들고 있다.

174) 宋五樞, 앞의 논문, 614쪽.



#### 4) 민사소송법 관련 문제

전자화폐인 전자정보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은 전자화폐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를 유체물로 파악하여 “동산집행”의 절차(민사소송법 제527조 이하)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채권집행의 절차(민사소송법 제557조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175)</sup> 전자화폐에 대하여 동산집행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그 집행절차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채권집행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절차상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하여는 압류명령을 발하고, 전자화폐 소지자에 대하여는 채권과 별도로 존재하는 전자정보의 양도를 금지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도 불분명하므로 전자화폐의 보존장치를 압류하여 환가하는 방법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sup>176)</sup> 이 경우 전자화폐에 대한 압류절차는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압류한 전자화폐를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압류의 목적물인 전자화폐를 점유하고 있어 보존장치 내에 있는 화폐정보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규정이 미비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령에 관계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화폐의 환가절차는 집행관이 압류한 전자화폐를 통하여 발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 청구하거나 전자화폐를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sup>177)</sup>

#### (3) 전자화폐 발행행위 관련 문제

은행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화폐의 발행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부수업무에는 전자화폐의 발행과 그 발행자금의 수입에

175) 增田 晋, 前掲論文, 50面.

176) 洪起汝/全鍾敏, 앞의 논문, 72쪽.

177) 洪起汝/全鍾敏, 위의 곳.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생각전대 전자화폐를 현금 대용의 지급 수단으로 이룬 구성하는 경우 전자화폐의 발행업무는 현금과 같은 지급 수단을 창출하는 업무에 속하므로 넓은 의미의 금융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전자화폐의 발행과 그 자금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제 2 절 전자화폐의 가치저장

전자화폐 발행자는 이용자에게 IC카드나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에 약 정된 금액정보를 저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금액정보가 저장된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불완전한 금액정보의 저장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이용자는 발행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발행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전자화폐의 가치저장은 금액정보의 저장이 완료되어야 종료되므로 발행자는 금액정보의 오입력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특히 해커 등 제3자가 발행은행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이용자의 예금을 대가로 진정한 전자화폐를 발행 받은 경우 그 발행금액 만큼 이용자의 발행은행에 대한 전자화폐의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제3자가 이용자 명의로 전자화폐를 발행 받은 것은 이용자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용자와 발행자 사이의 예금의 상환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발행은행은 전자화폐의 저장에 구체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에 관한 면책조항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으로는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데이터시스템, 보안시스템 그리고 인증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화폐 발행자에게는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약관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제 3 절 전자화폐의 가치이전

#### 1. 전자화폐 이전의 효력

전자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자유화폐이므로 그 자체가 강제통용력을 가진 금전과 달리 통상적인 지급수단일 수 없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를 변제로 보는 견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전자화폐를 대용화폐로 보는 견해에서는 대금지급채무 소멸의 문제가 생긴다. 즉 이용자가 가맹점에 전자화폐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가 아니며, 다만 전자화폐에 의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대물변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인 전자화폐 이용자에게 전자화폐의 이전 이후에도 결제 이전까지 대금지급채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전자화폐의 결제위험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이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 법으로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또는 전자화폐 이용약관에 대금지급채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sup>178)</sup>

#### 2. 전자화폐의 수령거절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을 대물변제로 보는 경우 가맹점이 전자화폐에 의한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용자의 전자화폐의 이전은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용자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에 약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전자화폐 수령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이 현실적으로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

178)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05쪽; 이경윤, 앞의 논문, 60쪽.

화폐의 지급효력 확보와 전자화폐 사용의 정착을 위하여 가맹점이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sup>179)</sup> 즉 전자화폐가 완전한 현금지급의 대체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하여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sup>180)</sup>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전자화폐는 IC카드 또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전기적 기호로 저장된 일정한 화폐가치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그러한 화폐가치를 저장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항상 위조·변조의 위험이 내재하여 있다. 즉 전자화폐 발행자 이외의 자가 전자화폐 발행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화폐를 위조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저장되어 있는 화폐가치를 변조할 수 있다. 나아가 전자화폐는 인터넷과 같은 공개적인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사용되든지 본질적으로 해킹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자는 자신이 발행한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방지, 통제 및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조직 및 절차상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화폐 상환의 신뢰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sup>181)</sup> 나아가 위조·변조된 전자화폐가 다시 유통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위조·변조된 전자화폐를 발견한 발행자는 이를 해당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또는 이를 해당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179) 같은 취지: 이경윤, 앞의 논문, 58쪽.

18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1) 같은 취지: 이경윤, 앞의 논문, 63쪽. 이에 대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전자지갑의 규모를 작게 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金銀基, 앞의 논문, 108쪽).

#### 4.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전자화폐는 그 자체가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전자화폐 자체의 분실·도난에 따른 손해는 당연히 전자화폐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시스템제공자가 구축하고 발행자가 제공한 IC카드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내에 존재하므로 사실상의 위험을 모두 이용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에 따른 법적 분쟁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발행자가 이에 따른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약관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화폐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전자화폐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sup>182)</sup> 그러므로 전자화폐가 분실·도난 당한 경우에 전자화폐 소지인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183)</sup> 특히 이용자가 전자화폐의 이용약관 및 취급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시에 전자화폐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는 전자화폐 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화폐의 이용자는 금액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IC카드 소지를 통한 금액정보를 관리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할 분쟁처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전자화폐의 도난은 도난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다. 즉 전자화폐의 도난은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채무소멸의 원인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채무소멸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자화폐 소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계획형 전자화폐에 있어서는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신고 전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sup>184)</sup> 즉 이 방안에 의하면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신

182) 鄭煥永, 앞의 논문, 254쪽.

183) 전자화폐가 위조·변조되면 손해를 보는 자는 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화폐가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금액정보가 도용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권리·의무 그리고 책임관계를 정형적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金銀基, 앞의 논문, 108/9쪽).

184) 이러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계획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칙 E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무권한 이체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가 2영업일

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지자가 일정 금액 또는 부정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액을 책임지고, 신고 후에는 발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sup>185)</sup> 그러나 비계좌적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이 유통되므로 이용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전자화폐 소지인이 당해 전자화폐의 소지인인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분실된 시점의 금액정보의 확정이 곤란하므로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민사소송법 제446조 이하)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제권판결에 의한 전자화폐의 재발행도 불가능하다.<sup>186)</sup> 그러므로 전자화폐를 분실·도난당한 자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가 존재하지 않는 권리자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보증금을 제공하면 상환청구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sup>187)</sup>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자화폐 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발행자는 절취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상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전자화폐의 상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와 면책에 관한 규정도 두어야 할 것이다.

## 제 4 절 전자화폐 결제

### 1. 상환청구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변제의 효력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인에게 선의·무과

---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그 책임한도를 50달러, 2영업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00달러까지, 거래명세표의 수령 후 60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FR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to Electronic Stored-Value Products, March 1997).

185)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이용약관에서도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즉시 통지와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이 신고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가 일정한 한도에서 보상하되, 비밀번호 누설 등 카드관리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BC카드회원약관 제17조 제1항, LG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8조의 2, 삼성카드 개인카드약관 제16조 제2항).

186) 鄭快永, 앞의 논문, 253/4쪽; 洪起汝/全鍾鎰, 앞의 논문, 63쪽.

187) 洪起汝/全鍾鎰, 위의 논문, 64쪽.

실로 번제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발행자는 전자화폐의 상환청구권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행자의 이러한 조사의무는 대량의 신속한 결제를 요하는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발행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전자화폐가 위·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것인가의 여부를 자신의 주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행자의 구체적인 검사시스템의 성능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발행자의 파산

전자화폐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예금을 미리 예치하고 그 대가로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후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발행자에게 전자화폐의 상환을 청구하는 법적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각 이용자 및 가맹점은 발행으로부터 상환까지 사이에 발행자의 파산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전자화폐가 기존의 화폐에 대신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소지인을 발행자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첫째 예금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 예금을 신탁예금, 특별예금, 담보부예금 등으로 별도로 적립하는 방안, 셋째 전자화폐 발행자 사이에 전자화폐 상환채무를 분담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떠한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정책의 문제이지만 예금거래에 연계되는 전자화폐는 이용자의 발행자에 대한 예금채권이므로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188)</sup> 그러나 전자화폐 발행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공탁, 또는 독자적인 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189)</sup>

188) 金銀基, 앞의 논문, 118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71쪽; 鄭完溶, 앞의 논문, 149쪽.

189) 金銀基, 앞의 논문, 119쪽; 손진화, 전자지급제도, 271쪽; 洪起汝/全鍾鉉, 앞의 논문, 131쪽.

## 제 6 장 결 론

전자거래가 갈수록 확산되고, 또한 그 거래규모도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자거래가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전자화폐에 의한 지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이용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요청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전자화폐에 관한 입법에 의한 방법과 약관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자화폐에 관한 입법으로는 은행법에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 전자화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다.<sup>190)</sup> 은행법에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발행기관을 은행에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비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전자화폐의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네트워크형 및 계좌형 전자화폐는 전자자금이체와 유사하므로 그 적용이 가능하나 카드형 및 비계좌형 전자화폐를 규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자화폐는 그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화폐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자화폐의 입법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자화폐제도의 법제화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화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존의 법률의 부분적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전자화폐의 이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제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방식은 거래구조나 법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결제수단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특성과 이용관계의 법적 구조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190) 鄭煥永, 앞의 논문, 259쪽.



규율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자화폐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자화폐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발행자와 전자화폐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행계약은 발행자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발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자화폐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규율 없이 전자화폐를 이용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맡기는 경우 그 이용의 안전성 내지 신뢰성 및 지급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전자화폐의 특성에 따라 화폐로서의 지급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자화폐 발행자의 자격,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 및 발행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발행자금의 관리와 지급준비를 위한 규정 및 발행보증금의 공탁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전자화폐 발행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및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한 발행자의 책임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 이용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채권을 전자화폐로 변제한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가맹점이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즉시성·기술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소멸된다는 법적 구성 및 전자화폐 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표준약관 및 분쟁해결 기구의 도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자화폐의 이전에 의한 대금채무의 소멸 및 지급의 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화폐 이용자간 전자화폐 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 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전자화폐의 이용에 따른 책임 및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점의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와 그에 대한 지급보장제도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거래의 결제에 있어서는 전자화폐의 게시, 상환, 최종결제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에서 발행자의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결제단계에서 발행자의 파산 등과 같이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 및 참가기관의 결제위험 분배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먼저 전자화폐 발행자의 채무의 전전성을 유지하고 상환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사실상의 파산위험을 조기에 줄이는 것이다. 즉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로써 발행자가 취득한 발행대가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발행자의 파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다른 발행자나 참가은행이 파산한 발행자의 파산위험을 보증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러한 수단을 고려하면 모든 발행자 내지 모든 참가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당해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자화폐를 원활하게 규율하는 방안으로는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맹점이 전자화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요청된다. 그러나 전자화폐에 관한 입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전자화폐에 의한 규율은 약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약관에 의하는 경우 전자화폐 실용화의 선결조건으로서 전자화폐 결제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전자화폐 이용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점은 거래현실에 맞추어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 나승성,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0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정영화,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2  
정진명, 가상공간법연구(I), 법원사, 2002  
정쾌영, 전자거래법, 무역경영사, 2000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 2. 논문

- 김영갑/최성준, "정보사회에 對備한 商事法 研究 序說", 情報社會에 對備한 一般法 研究(I), 通信開發研究院, 1997  
金銀基, "電子貨幣의 法的問題", 「商事法研究」, 제16권 2호 (1997.12)  
김택주, "電子貨幣에 의한 決濟와 法的 問題", 「東亞法學」(동아대), 제27호 (2000)  
금융결제부, "전자화폐의 발행과 규제에 관한 BIS보고서", 1996.8  
朴鉉沃, "電子貨幣 利用關係의 法的 構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경남대), 1999.12  
孫晉華, "새로운 電子支給制度의 法律問題와 立法論", 情報社會에 對備한 一般法 研究(II), 情報通信政策研究院, 1998  
\_\_\_\_\_, "電子資金移替去來의 規律方案", 「商事法研究」, 제12집 (1993.10)  
宋五植, "電子貨幣와 法的課題", 「民事法の實踐的課題」(開道 鄭煥淡教授 華甲紀念), 2000  
이경운,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제4권 1호 (2000.12)  
이은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비교사법」, 제5권 2호 (1998.12)

## 참고문헌

- 全三鉉, “銀行去來上 電子資金移替의 法的 問題”, 「法學論叢」(숭실대), 제 10집 (1997.2)
- 鄭敬永, “電子貨幣의 法的構造”, 「商事法の 展開」(荷邨 鄭東潤先生 華甲 紀念), 1999
- 鄭完溶, “電子貨幣에 의한 電子決済制度”, 「慶熙法學」(경희대), 제33권 2호 (1998.12)
- 鄭震明,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인터넷法律」, 제4호 (2001.1)
- \_\_\_\_\_, “전자지급의 민사법적 과제”, 「民事法學」, 제21호 (2002.5)
- \_\_\_\_\_,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인터넷法律」, 제3호 (2000.11)
- \_\_\_\_\_,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比較私法」, 제6권 1호 (1999.6)
- 鄭燦亨, “電子資金移替制度”, 「韓國金融法研究」, 제4호 (1991.2)
- 鄭快永, “電子貨幣의 法的 問題點과 改善對策에 관한 研究”, 「企業法研究」, 제13집 (2000.11)
- 洪起汝/全鍾鉉, “電子貨幣의 普及을 위한 法律上 問題”, 「法律行政論叢」(전남대), 제20집 (2000)

## II. 외국문헌

### 1. 단행본

- 岩村 充, 電子マネー-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6
- Boehmer-Neßler, CyberLaw, C.H.Beck, 2001
- Schwintowski/Schäfer, Bankrecht, Carl Heymanns, 1997
- Smendinghoff, Online Law,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1996

### 2. 논문

- 內田 貴, “電子商去來と法(3)”, 「NBL」, No. 602 (1996.10)
- 寺本振透 外, “電子マネーの實用化に向けて(上)”, 「NBL」, No. 614 (1997.4)
- 森田宏樹, “電子マネー-의 法的構成(1)-(5)”, 「NBL」, No. 616 (1997.5)

- 小澤徹夫, "電子マネー-の取引当事者間の法律関係と損失の配分(I)-(VI)",  
「NBL」, No. 623 (1997.8)
- 電子マネー-實現研究會, "電子マネー-實現に向けての法的検討", 「NBL」, No.  
640 (1998.5)
- 増田 晋, "電子マネー-をめぐる私法上の諸問題", 「金融法務事情」, No. 1503  
(1998.1)
- 織田恭一, "電子マネー-は通貨になれろか", 「銀行法務」, No. 550 (1998.7)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Electronic Money-con-  
sumer protection, law enforcement, supervisory and  
cross border issues-",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electronic money April 1997 ([http://www.bis.org/publ/  
gten01.htm](http://www.bis.org/publ/gten01.htm)).
- Escher, "Bankrechtsfragen des elektronischen Geldes im  
Internet", WM 1997
- Kümpel, "Rechtliche Aspekte des elektronischen Netzgeldes  
(Cybergeld)", WM 1998
- \_\_\_\_\_, "Elektronisches Geld (cyber coins) als Bankgarantie",  
NJW 1999
- Perritt, Herry H. Legal Journ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  
tures for Electronic Payment Systems, 22 Rutgers  
Computer & Tech. L. J. I. 39 (1996.1)
- Pfeiffer, "Die GeldKarte -Ein Problemaufriß", NJW 1997
- Pichler, "Rechtsnatur, Rechtsbeziehungen u. zivilrechtliche  
Haftung beim elektronischen Zahlungsverkehr im  
Internet", Arbeitsberichte zum Informations-, Telekom-  
munikations- und MedienR(Hrsg.: Hoeren/Holznapel),  
Münster, 1998
- Schön, "Prinzipien des bargeldlosen Zahlungsverkehrs", AcP  
198 (1998)
- Werner, "Rechtsfragen des elektronischen Geldes", in Hoeren/  
Sieber, Multimedia Recht